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463-01

2007 - 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대한민국 정부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 5



대한민국정부

목차

제1부 서론 5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7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대 효과	8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10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13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17

I. 생명권	19
II. 신체의 자유	24
III. 거주·이전의 자유	39
IV.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43
V.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51
VI.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56
VII. 참정권	60
VIII.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65

목차

제3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73

I. 교육을 받을 권리	75
II. 근로의 권리	83
III. 근로3권	96
IV.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101
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5
VI. 건강·보건 및 환경권	119
VII.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131
VIII.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136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149

I. 여성	151
II. 아동·청소년	158
III. 장애인	167
IV. 노인	174
V. 범죄피해자	180
VI. 외국인	186
VII. 재외동포	193
VIII. 난민	196
IX. 새터민	200
X.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204

목차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209

- I. 인권교육 211
- II.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223
- III.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228

제6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235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237
-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237
-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 237
-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238
-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238
- 6. 후속계획의 수립 238

부 록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239

제 1 부

서 론

1

- 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 I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 II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대 효과
- IV.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 V.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외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음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적으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정부 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함으로써 인권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지향점으로 설정한 공식적인 범정부 계획임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가. 1993년 세계인권회의(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 1993년 UN 주관으로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각 정부 및 국제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많은 권고와 제안을 담은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함
-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각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그램을 UN 내에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함.

나.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 2001. 5. 21.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2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한 후 발표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과 협력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추후 제출될 제3차 정기보고서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다. 세계 각 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세

- 1993년 호주가 최초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07년 4월 현재 약 20여개 국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호주(1993), 라트비아(1995), 말라위(1995), 필리핀(1996), 브라질(1997), 남아프리카공화국(1998), 멕시코(1998), 에콰도르(1998), 인도네시아(1998), 노르웨이(1999), 베네수엘라(1999), 볼리비아(1999), 콩고(2000), 태국(2001), 스웨덴(2002), 리투아니아(2002), 몰도바(2003), 몽골(2003), 마우리타니아(2003), 네팔(2004), 페루(2006)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대 효과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확인
 -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국가의 책무를 국가정책 추진에 투영함으로써 이를 확인함
-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국내·외 천명
 - 국내 정책 중 인권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인권 영역 및 인권 대상별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간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천명함
- 인권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정책의 연계 및 종합
 - 정부 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및 개별정책사업을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기준으로 종합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
-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인권정책 개발
 -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및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인권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 시민적·정치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 확대 및 보호
 - 생명, 신체, 거주·이전, 프라이버시, 양심, 종교,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치참여 등 시민적·정치적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자유에 대한 국가적 제한 축소를 통해 개인의 향유 기반을 확대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적극적 보호 정책을 시행함
- 양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보
 - 사회 전 분야 걸친 양극화에 대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한계계층의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함
-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문화, 보건서비스 등에 대한 폭넓은 향유 기회 제공, 향유 비용 저감 및 인권에 기초한 내실화 등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 내의 법적·제도적·관행적 차별을 철폐하고, 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내 구성원 간에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 통합에 기여함
- 인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제고
 - 인권에 관한 국내·외 기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 등에 관하여 교육과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대 효과

-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 포괄적 인권정책 수립으로 향후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이 보다 종합적·유기적으로 추진·시행될 계기가 마련되고,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에 따라 인권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 폭 확대
 - 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에 따라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의 수준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
 - 인권에 관한 일관된 정책의 수립·시행과 이에 대한 일반의 폭넓은 이해는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시아 인권 선도국으로의 도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요구사항에 상응할 수 있는 인권수준 향상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정

- 2003년 10월 관련 정부기관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담당하기로 결정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 2004년 3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마련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효율적 협의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200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
 - 권고안은 2007년~2011년간 5개년 계획으로 제1부 NAP의 개요와 추진방법, 제2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의 11개 계층별 분류), 제3부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강화, 인권교육 강화,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으로 구성

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

- 2006년 1월 2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합의
 - 관계부처가 자체 소관부분을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면 법무부가 취합·총괄하여 종합계획안 마련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결정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후 최종안 확정

마.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정

- 2006년 7월 28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정
 -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 협의·조정 절차를 통해 수립

바. 관계부처 간 협의

- 2006년 4월~1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참여

사. 국민 일반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2006년 12월 4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1차 공청회 개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마련 이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및 내용에 관하여 인권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 자유권 분야, 사회권 분야,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의 3부로 나누어 학계, 법조계, 경제단체, 인권단체 등 16명의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 진행
- 2007년 2월 13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 개최
 - 법무부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을 진행
 - 자유권 분야, 사회권 및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의 2부로 나누어 학계, 법조계, 경제단체, 인권단체 등 15명의 전문가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여

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확정

- 2006년 12월~2007년 3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1·2차 공청회의 논의 내용과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토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국내 현황과 국가적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의 내용을 협의
- 2007년 4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안 작성
- 2007년 4월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2007년 5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발표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정부안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내·외에 발표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목표 영역 및 대상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서 포함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편익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으로 구분함
-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영역으로 세분함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보건 및 환경권,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로 세분함
- 이러한 인권 영역별 분류와 별도로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 재외동포, 난민, 새터민, 병력자, 성적소수자를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적 추진과제 중 해당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제들을 분류하여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로 편성함
- 이와 같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은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내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것인 만큼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향유하여야 할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목표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음

나. 국내적 기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내적 기준으로 인권에 관한 최고규범인 헌법 중 해당 인권의 근거 규정을 기재하되, 명시적인 헌법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한 헌법의 해석으로 해당 인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재함

다. 국제적 기준

-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유엔의 각종 인권 관련 협약(Convention), 선언(Declaration), 지침(Guideline), 기준(Standard), 원칙(Principle), 권고(Recommendation) 등 매우 다양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 중 ‘세계인권선언’ 과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을 기준으로 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주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국내적 이해 증진을 위해 인권 영역별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협약의 관련 규정 및 요지를 기재함

라. 국내 현황 및 쟁점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영역별 국내 현황 항목을 통해 국내적 문제제기, 논의, 개선추진노력, 법안제출상황 등을 기재하고 이러한 국내 현황에 비추어 문제되는 핵심사항을 쟁점으로 정리함

마.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우리나라가 가입한 6대 국제인권조약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그 이행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조약기구로부터 심의를 받고 있음

- 각 국제인권조약기구는 정부보고서 심의 이후에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인권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권고(Recommendation)를 하고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와 같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에 대한 홍보와 국내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 영역별로 국제인권조약기구별 권고의 요지를 포함함

바.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 해당 인권 영역에 대한 국내·외 기준, 국내 현황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정부 각 관계부처가 마련한 소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이행방안을 제시함

제 2 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2

- I. 생명권
- II. 신체의 자유
- III. 거주·이전의 자유
- IV.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 V.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VI.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VII. 참정권
- VIII.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1. 생명권

1 국내적 기준

- 생명권에 관하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헌재 1996. 11. 28. 95헌바1)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3조
 - 생명권
- 자유권규약 제6조
 - 생명권, 생명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자의적 생명 박탈 금지
 - 사형 선고 제한(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선고, 18세 미만 자에 대한 선고 금지)
 - 사형선고자의 사면 또는 감형 청구권
 - 사형 집행 제한(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한 집행, 임신부에 대한 집행 금지)
- 아동권리협약 제6조, 제37조 가호
 - 아동의 생명권, 생존권
 - 18세 미만 자에 대한 사형 선고 금지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1998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형제도의 존폐 및 사형 대상 범주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적 논의 지속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 결정(헌재 1996. 11. 28. 95헌바1)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사형제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 등 종교·사회·인권단체의 사형제도 폐지 요구
 - 2004년 12월 유인태 의원,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발의
 -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
- 2005년 1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배아 연구, 유전자 검사·연구 등에 관한 최소한의 생명윤리 기준이 제도화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국가생명윤리심의회가 설치되었으나, 국제적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와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
- 1990년대 말 자살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이 4위, 20~3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OECD 국가 중 자살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구금시설 내 사망자 수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권고(제14항)
 - 구금시설 내 자살예방 프로그램 수립 권고(제14항)
 - 구금시설에서의 사망자 수와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의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 실시 권고(제14항)
 - 군대 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실시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현행 조치 및 프로그램의 효용성 평가 권고(제15항)

- 군대 내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모든 군인의 인식제고, 훈련 및 교육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제15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사형이 적용되는 사건의 축소를 위한 조치 권고(제9항)

4 쟁 점

-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
- 국제적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내실화
- 생명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을 통한 자살사망을 억제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사형제도 개선

- 현행법상 사형 규정의 타당성 검토
 - 사형제도의 존폐 논의와 별도로 현행법상 사형 규정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별적 타당성 검토
 - 각 규정별로 보호법익과의 균형성, 정치적 남용가능성, 실제 사형선고 사례 유무 등 존치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 2007년 중 사형제도 존치 여부 검토
 -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억지력 유무 및 사형제 폐지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존폐 여부에 대한 선입견 없이 분석·검토
 - 사형 폐지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 등 폐지의 영향
 - 사형제 부활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

- 2007년 중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분석
 - 절대적 종신형 도입국의 제도운영 실태
 - 절대적 종신형 도입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행형 효과 분석
 - 중구금시설의 설치 등에 따르는 예산, 인력소요 등에 대한 분석
- 연구성과를 토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심사에 반영
- 정신건강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
 -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운영 및 자살예방 사이버상담실 운영
 -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유해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 범국민 생명존중운동 전개
 -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생명존중 고취 운동 전개

나. 생명윤리·안전 강화를 위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개정 등

- 2007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연구치료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 생식세포(난자·정자)·배아 기증 시 동의 절차 강화
 - 검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서면동의 강화
-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생식세포의 기증자격 및 관계 제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은행의 검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익명화” 조치 의무화
- 연구·치료기관의 생명윤리·안전 강화를 위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 활성화
 - IRB 위원 수 상한을 확대 또는 삭제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다양한 관점 확보 도모
 - IRB 협약 체결 조건을 완화하여 우수한 IRB 활용 및 학습 도모

- 법 개정과는 별도로 국내 IRB 및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해외의 IRB 위원 양성 프로그램 연수 지원 등 생명윤리 교육 확산

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

-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 (2004년 11월) 및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2005년 9월)에 의한 종합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TV, 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II. 신체의 자유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28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노예·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 자의적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
 - 죄형법정주의
- 고문방지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 고문 :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원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부수된 고통 제외)
 - 고문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기타 조치
 - 고문 위협이 있는 타국으로 추방·송환·인도 금지

- 모든 고문행위(미수, 공모, 가담 포함)의 범죄화 및 형사처벌
- 고문사례 방지를 위하여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제도와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
- 고문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 보장
- 고문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
- 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행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교사·동의·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고문에 미치지 않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 자유권규약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 고문 혹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 자유로운 동의 없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 금지
 - 노예·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자의적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법률 및 적법절차에 따른 자유 박탈, 체포이유 통지, 피의사실 통지, 법관예의 신속한 회부, 합리적 기간 내 재판 또는 석방, 불구속 원칙, 구속적부심, 불법 체포·구속에 대한 보상청구권)
 - 피구금자의 권리(인도적 취급을 받을 권리, 미결수와 기결수의 분리, 미성년범죄자·피고인과 성인의 분리, 교정과 사회복지 처우를 포함하는 수감제도)
 -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 형사절차적 권리(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죄의 성질 및 이유에 대한 통지, 변론준비 및 변호인과 연락할 권리,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출석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필요 시 비용부담 없는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증인신문권, 통역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미성년자의 연령 및 갱생촉진 고려, 상급 법원의 재심을 받을 권리, 오심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 파기 또는 사면 시 보상청구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40조 제1항, 제2항 가호, 나호 (1)목 내지 (4)목, (6)목, (7)목, 제3항, 제4항
 -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 자의적 자유 박탈을 당하지 않을 권리(법률에 따른 체포·구금, 아동에 대한 체포·구금의 최후수단·최단기간 사용, 아동의 법률적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히 접근할 권리, 체포·구속적부심)
- 피구금아동의 권리(인도적 취급을 받을 권리, 아동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한 처우, 아동과 성인의 격리, 서신과 방문을 통한 가족과의 접촉유지권)
- 형사절차적 권리(18세 미만 자에 대한 석방가능성 없는 종신형 선고 금지, 아동의 연령 및 사회복지 촉진 고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피의사실 통지, 변론준비 및 제출 시 지원을 받을 권리,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기타 적절한 지원 하에 공정한 심리 속에서 지체 없이 재판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증인신문권, 통역을 받을 권리,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의 충분한 존중)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 적용될 특별한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 설립 촉진(형사무능력 연령 설정, 적절한 경우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조치)
- 아동에 대하여 복지에 적절하고 그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한 취급이 가능한 여러 처분(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기타 대체방안 등) 이용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긴급체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없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수사기관의 인신구속기간은 장기간임에 반하여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조건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대부분의 피의자 신문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고 국선변호인조차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
- 장애인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함

- 여성유치인, 장애인유치인, 외국인유치인 등의 특성에 맞는 인권친화적 유치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대용감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찰서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미결수용자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비판이 있음
- 수형자의 자유가 질서유지 목적,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억제되는 경우가 있고, 교정시설 본연의 목적인 수형자에 대한 교정 및 사회복귀 처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소년범에 대한 현행 절차가 처벌 위주로 운용되고 있고, 소년사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소유예처분 소년범 중 대부분은 별다른 보호절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별도의 심사 없이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사례가 발생
-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훈련과 관련하여 부당한 입원·입소 및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원·퇴소 거부,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치료를 빙자한 강제노동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 제기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고문방지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고문범죄를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일치하는 용어로 규정하는 법 제정 권고(제62항)
 - 고문방지협약 및 일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국내법 재검토 권고(제63항)
 - 독립적 정부기구가 구치소 및 교도소의 조사를 담당할 것을 권고(제65항)
 - 고문범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법집행요원의 일원인 검사가 주된 조사자가 되지 않도록 권고(제65항)
 - 고문방지위원회가 주목하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주장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조사결과의 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한 제출 권고(제66항)

- 피의자 기소 전 신문을 위한 최장 30일 또는 50일의 경찰 건물 내 구금기간의 단축 권고(제67항)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허용 권고(제68항)
-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일치하도록 국내 형법에 고문 범죄 구체화 권고(제4항)
 - 모든 고문행위가 고문방지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형법 재검토 및 개정 권고(제5항)
 - 국가보안법이 고문방지협약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에 따른 체포와 구금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도록 지속적 재검토 권고(제6항)
 - 구금 및 교정시설 중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집행관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정책(a policy of zero tolerance)의 발전 및 이행 보장
 - 경찰에 의해 구금된 사람에 대한 기본적 법적 보호장치가 존중될 수 있는 실효적 조치 권고(제9항)
 - 국회에 계류 중인 (피의자)신문과 조사 중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권고(제9항)
 - 긴급체포절차 사용요건의 엄격 규정, 그 남용을 방지하는 법적·행정적 조치의 채택 및 긴급체포에 의해 구금된 자의 권리 보장 지속 권고(제11항)
 - 국회에 계류 중인 긴급체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권고(제11항)
 - 한국 정부의 관할권 지역 밖으로 한국민 및 외국인의 추방, 귀환 또는 송환 결정 시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요건의 적용 보장 권고(제12항)
 - 대용감방의 사용 제한, 그 기능 명확화, 수감자를 위한 인도적 처우 제공 및 계획된 새로운 구금시설 건축의 이행 권고(제13항)
 - 모든 구금시설이 국제적 최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권고(제13항)
 - 구금시설에서 의료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 및 접근 제공 권고(제14항)
 - 군내 부당한 대우 및 가혹행위 방지 권고(제15항)
 - 고문 결과로 이루어진 진술이 어떠한 절차에서도 증거로 원용될 수 없도록 보장할 것 권고(제16항)
 - 소송절차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 채택 권고(제16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형법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유권규약 제15조(죄형법정주의 관련)의 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 조치 권고(제9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 제9조에 규정된 피구금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및 관련 형사소송절차의 지체 없는 개정 권고(제13항)
 -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상급법원에 대한 상소권)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제20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모든 구금시설(정신보건시설 포함)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독립적 조사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신문의 비디오 녹화 등) 권고(제13항)
 - 가혹행위자에 대한 기소,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 등 효과적 구제수단의 보장 권고(제13항)
 - 가혹하고 잔인한 징계구금 조치(특히 수감·사슬·안면보호구의 사용 및 30일간의 독방구금 연속 부과)의 중단 권고(제13항)
 - 모든 형태의 구금에서 변호인에 대한 신속한 접근 보장 권고(제14항)
 - 자유권규약 제9조와 합치하도록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긴급체포에 의한 피구금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채택 권고(제15항)
 -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를 자유권규약 제9조에 규정된 대로 반영하는 법률 개정 권고, 특히 어떠한 구금이라도 신속하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 권고(제16항)
-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특히 제37조, 제39조, 제40조)과 베이징 규칙, 리야드 지침, 자유가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를 위한 UN 규칙과 같은 소년사법 분야 UN 기준의 정신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 착수 구상 권고(제31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 (5)목(형법위반 판결 및 조치에 대한 상소권)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제10항)
 - 아동권리협약(특히 제37조, 제39조, 제40조), 베이징 규칙, 리야드 지침 등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 보장 권고(제57항)
 - 소년에 대한 신체자유박탈은 최후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신체자유박탈에 이를 수 있는 보호처분에 처해진 모든 소년들이 조기에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제57항)
 - 미성년자의 형사절차 또는 보호처분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의 재량권을 제거하는 법률 개정 권고(제57항)

4 쟁 점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신구속제도의 운영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적 권리의 충실한 보장
- 수형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확보 및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제고
- 소년범의 연령 및 사회복귀 촉진을 고려한 소년사법제도 마련
-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인권적 감독 강화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2007년 4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향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 긴급체포제도 개선
 - 긴급체포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30일 이내에 법원에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고지 규정 신설
- 필요적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도입
 -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함
- 다양한 석방조건의 마련
 - 보석의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장소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행위 또는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서약 또는 출국금지조치 수인, 피해회복에 필요한 금액 공탁 또는 담보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등의 석방조건 규정

나. 형사절차적 권리의 증진

- 2007년 4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향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국선변호의 범위를 영장실질심사절차의 피의자, 구속피의자에게 확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 변호인의 신문참여제도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호인은 이를 거부당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신문에 참여할 수 있음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신문 중이라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이 열람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피고인의 보호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재판장 또는 법관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①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②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경찰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개선

- 여성유치인을 위한 개선
 - 여성유치실의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 타 유치실과의 차단을 위한 차폐막 설치, 별도의 여성 신체검사실 설치 등
 - 여경 유치인 보호관이 유치장 1개소에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단계적 증원 배치 예정
- 장애인유치인을 위한 개선
 - 2006년 3월 개정된 『유치장설계 표준규칙』에 따라 유치장 및 유치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역시스템 구축
- 외국인유치인을 위한 개선
 - 유치장 내 1개 방을 '외국인방'으로 선정 운영하고 외국인용 신체검사복과 좌변기 등 설치
 - 『유치인 생활수칙』을 8개 국어로 제작·활용
 - 유치장 근무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인·통역전화기·민간통역단체와의 핫라인 구축

라. 대용감방 개선

- 대용감방 개선 협의회 구성
 - 법무부 및 경찰청이 함께 '대용감방 개선 협의회'를 구성
 -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하고, 개선상황을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인근 교도소의 인수 후 폐지
 - 영덕, 의성 2개소는 2007년 초까지 인근 교도소에서 인수하고 폐지
- 교정시설 신축을 통한 폐지
 - 해남, 밀양, 영월 3개소는 현재 신축 중인 교정시설이 완공되는 2009년 폐지
 - 신축계획이 수립된 정읍, 상주 2개소는 신축계획의 신속한 추진 예정
 - 속초, 거창, 영동, 남원 4개소는 신축계획 수립 검토

- 대용감방 운영 및 시설 개선
 - 대용감방 폐지 이전까지 그 운영 및 시설을 개선할 필요
 - 검찰·법원의 협조를 통해 수사 및 재판의 신속한 진행 등으로 대용감방 수감기간을 최단기화
 - 장기 수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수용자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선
 - 여성경찰관 배치 등 인권적 차원의 관리 강화
 - 대용감방의 시설 개선(직접조명 설치, 샤워실, 여성 전용 유치장 등)

마.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한 『행형법』의 개정

- 2006년 4월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추진 예정

- 행형법의 명칭 변경
 - 행형법의 명칭을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행형법이 수용자처우의 권리장전이라는 취지를 반영
- 집행 사전허가제 폐지
 - 수용자가 문예 및 창작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위 보장
 -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음을 명시
 -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 수수 기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 보호장비 중 사슬의 폐지 및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 종래의 보호장비 중 비인도적인 '사슬'을 제외하는 한편, 수용자의 신체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보호장비인 보호복, 보호대, 보호침대 등을 도입
 - 보호장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함
- 신체검사 시 인권보호
 - 수용자의 신체검사 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면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함

- 징벌제도의 개선
 -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을 징벌에 추가하여 징벌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금치 위주로 집행되던 징벌 관행을 개선하고, 규율 위반의 태양에 따라 그에 상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징벌 중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는 '도서 열람 제한' 삭제
 - 지나치게 기간이 길어 인권침해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금치기간을 2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징벌시효제도를 신설,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국가의 징벌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 보장
- 징벌결정의 공정성 제고
 - 징벌위원회 위원을 5인 이상 7인 이하로 증원하면서 외부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제도 도입
 - 징벌대상자의 징벌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권 규정
-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강화
 - 법무부장관 및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제도 이외에 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청원제도를 추가
- 여성 수용자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규정을 신설하여 신체적 특성,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함
- 귀휴제도 개선
 - 귀휴 실시 최소복역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여 단기수형자 귀휴 허용
 - 일반귀휴기간을 1년 중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특별귀휴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

바. 수용자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 독거수용비율의 확대
 - 행정법의 독거수용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축되는 기관부터 독거수용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 현행 수용정원 대비 독거수용비율 13.7%를 2011년까지 18%, 장기적으로는 30%까지 확대
 - 2007년 흥성교도소 수용사동 증축 48실(독거수용비율 14%), 2008년 시화직업훈련 교도소 120실(독거수용비율 14.3%), 2009년 영월·밀양·해남교도소 300실(독거수용비율 14.9%), 2010년 영등포교도소·구치소 및 마산교도소 1,200실(독거수용비율 17.5%), 2011년 정읍교도소 250실(독거수용비율 18%) 추진 계획

- 혼거수용사동의 1인당 수용면적 확대
 - 혼거수용사동의 기준면적으로 1인당 0.75평에서 0.78평으로 상향 조정
 - 2011년까지 0.78평의 상향 조정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수용정원 재조정 및 교정시설 신·증축 추진

사. 과학적 수형자 분류를 통한 사회복지능력 제고

- 분류심사업무의 객관화 및 효율화
 - 분류지표의 세부항목 대표준화를 통한 타당성·신뢰성 제고
 - 객관적 정보를 통한 분류심사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 2007년 수형자분류심사표(법무부령인『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별표)의 전면 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
- 분류심사과 및 분류전담교도소 운영
 - 분류업무를 전담할 분류심사과를 교정국 본부 및 지방교정청에 운영
 - 분류전담교도소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수립
 - 분류직 교정공무원 증원 추진
 - 각 지방교정청별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류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수형자 분류전담교도소 운영 추진
- 사회복지 능력 배양을 위한 수형자 처우의 단계화 및 맞춤형 교정프로그램 시행
 - 수형자의 처우를 시설적응단계, 교화중점단계, 사회적응단계의 3단계로 단계화하고, 단계별 적응 실패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재적응단계를 추가함
 - 2008년 이후 단계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정프로그램을 시행
- 교정시설의 분류
 - 수형자의 교정처우 및 사회복지 능력 배양을 위한 단계별 처우를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을 일반경비시설(시설적응단계), 완화경비시설(교화중점단계), 개방시설(사회적응단계) 및 중경비시설(시설재적응단계)의 4단계로 분류
 - 수형자는 처우 단계별로 분류된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단계별 처우를 받게 됨
 - 2008년 이후 전국 교정시설 경비등급화 시행

아.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가족만남의 집' 을 설치
 - 2007년 원주교도소 등 18개 기관 설치
 - 2008년 통영구치소 등 18개 기관 설치
- 수용자 인성교육제도의 시행
 - 수용자 정신교육을 인성교육으로 전환하고 외부 전문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인격형성 및 재범방지 도모
- 문화적 교정 프로그램
 - 음악·미술·심리치료 등 수형자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 시행
 - 2007년 수용자 문화프로그램으로 약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용자의 선호도와 교화효과 정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정·시행

자. 소년범의 연령 및 갱생촉진을 고려한 제도 개선

- 기소전 다이버전(diversion,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다양화·내실화
 - 기소전 단계에서 선도·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소년범 처리의 내실화 도모
 - 종래 사안의 경중 및 전과를 토대로 단순 기소유예 또는 기소하였던 사건이라도 보호자의 보호의지, 대상자의 환경, 성격 등에 비추어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선도·보호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적극 활용
 - 향후 구체적인 지침 결정
- 검사의 결정 전 소년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에 의한 환경·인성 조사
 - 검사의 소년사건 처리 시 소년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 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화·선도를 통한 소년범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촉진

-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기타 인성·환경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소년분류심사관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범에 대한 인성·환경 등 조사 의뢰
- 검사는 사안의 경중, 범죄전력 외에 소년분류심사관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의 교화·개선에 적합한 처분을 결정
- 현재 광주, 부산, 서울남부, 서울동부 4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실시 중
- 향후 전국적 확대 여부, 구체적인 지침 결정
-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개방 처우 확대
 - 소년원 학생의 장기간에 걸친 가정 및 사회와의 단절을 막고, 개방적이고 참여위주의 체험 및 인성교육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 역량 배양
 - 통학·통근·학원수강, 외출 및 가정학습, 가정관 이용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범죄 가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속
 - 성범죄 가해 청소년에게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원하여 가해 청소년의 건전의식 및 타인 존중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성범죄 가해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차. 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점검

- 2007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 6월을 초과하는 외국인 장기보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불가피하게 6월을 초과하여 외국인 보호소 등에 보호하게 되는 경우,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6개월이 초과된 날부터는 매 3월마다 그 기간 종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카.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 2006년 1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 자의입원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의무(연 1회 이상)
- 입원·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 신상정보 확인 의무
 -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신상정보 조회 요청
- 입원·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금지 및 처벌
-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제한
 - ①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③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하여 ④ 정신과전문의(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정신보건전문요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⑤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작업에 한하여 작업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 입원·입소 및 퇴원·퇴소에 관한 정신보건법 상 의무를 위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 입원·입소 및 퇴원·퇴소에 관한 정신보건법 상 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설치·개설 제한

III. 거주·이전의 자유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4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3조
 - 자의적 추방 금지
 -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 자유
 -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권리
 -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
-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3조
 -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 자유
 -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출국할 권리
 -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
 - 법률에 따른 결정이 아니면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10조
 - 가족재결합을 위한 아동 또는 부모의 입국·출국 신청의 신속 취급
 -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고려하여, 아동과 부모가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 출국할 권리와 입국할 권리 존중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4항
 - 이동 및 거소·주소 선택의 자유에 관한 동일한 권리 부여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i)목, (i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전체인구의 약 24%임에 반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기준에 적합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설치율은 평균 약 59% 수준에 머물러, 교통약자가 이동권을 행사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서지역 주민의 경우 내륙과 도서간 이동에 있어 육상교통수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내항여객선 운임으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
- HIV/AIDS 감염인 등 전염병 환자로 밝혀진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4 쟁 점

- 신체적·경제적·환경적·지리적 원인에 의하여 이동의 자유 실현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이동권 보장
- 전염병 환자로 밝혀진 외국인의 강제퇴거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정책의 체계적 수립

(1)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

- 2007년 4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2007~2011)」 수립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군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 수립
- 2007년 이후 매년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지방자치단체별 교통복지 수준 평가

(2)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 지하철역 1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 2007년 3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통사업자 등에 「이동편의시설 관리 매뉴얼」 배포
- 매년 교통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2011년까지 저상버스 30% 이상 보급
- 2011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45% 이상 보급

(4)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건축물·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실시
 - 2007년 5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연구용역 추진
 - 2007년 8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선정 및 설계용역 착수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곳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행우선구역 설계 지원

(5) 이동편의를 위한 연구개발 등

- 보행우선구역 지정에 따른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
-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자가운전에 필요한 운전장치 개발
- 저상버스 표준모델 및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개발 등

나. 장애인에 대한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차별 금지

- 2007년 4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금지되는 차별의 범위에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차별 포함
 - 2008년 4월부터 시행 예정

-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접근·이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 금지
-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사용 거부 금지
 - 장애 또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요금 제도 적용 금지
 -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최고운임제의 지속적 시행
 - 최고운임제는 일정 최고운임을 초과하는 운임에 대하여는 전액, 최고운임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의 운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
 - 최고운임은 5,000원, 비율은 20%로 정하여 시행하고 향후 지원효과 분석 및 점검을 통해 조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소요 예산을 50:50으로 분담

라. 강제퇴거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인도적 집행 노력

- 긴급한 치료로 인하여 출국조치 집행이 곤란한 대상자의 경우 인도적 차원의 체류허가 조치 적극 시행
- 입국 후 전염병환자임이 발견되거나 전염병환자가 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

IV.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 제16조, 제17조, 제18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사생활·가정·주거·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 금지
 - 명예·신용에 대한 비난 금지
 - 이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4조 제2항
 - 사생활·가정·주거·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명예·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 금지
 - 이러한 간섭과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아동의 성명권
-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8조, 제16조
 - 아동의 성명권
 - 사생활·가정·주거·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명예·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 금지
 - 이러한 간섭과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3 현 황

- 보안관찰제도에 대하여 사회 일각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주장
 - 신고의무 등의 부과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보안관찰의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는 주장
 -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제도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 및 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헌재 2001. 7. 19. 2000헌바22, 헌재 2003. 6. 26. 2001헌가17)
- CCTV 등 감시장비가 관련 법령이나 기준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그 기록의 보관 및 파기 과정 상에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미흡하여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 문제화됨
 - 2005년 1월 김충환 의원,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개인의 화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05년 11월 고흥길 의원,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 특히 사업장 내에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방지, 기밀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여러 첨단 기술이 작업장 내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문제 제기
- 수용자에 대한 원칙적 서신검열 및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한다는 주장 제기
- 정보화의 역기능인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부터 정보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기
-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과도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상에서 실명확인 수단으로 사용된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사고가 빈번할 뿐 아니라 인터넷 기업에 의하여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2차적인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상존함

-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요청됨
 - 2004년 11월 노회찬 의원,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발의
 - 2005년 7월 이은영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
 - 2005년 10월 이해훈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
-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에 대한 정보화가 추진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가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환자의 알권리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하여 철저한 건강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의 결과가 건강진단개인표의 형태로 사업주에게 송부되고, 사업주가 이를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의 개인 건강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4 쟁 점

- 보안관찰제도의 남용 여지 축소
- CCTV 등 감시장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 교정시설 수용자의 서신검열 제한 및 집필권 제한 완화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및 명의도용방지 대책
- 개인정보기본법 제정
- 개인건강정보 보호대책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통보 방식의 개선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

-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
 - 2006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범위험성에 대한 실질심사의 지속적 시행
 - 법무부 사안 조사 공무원이 형식적 기록검토 이외에 대면조사 내지 전화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조사 수행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보안관찰대상자 등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위원들이 직접 신문하도록 함
-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보안관찰대상자 등에게 유리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 면제청구 확대
 - 면제요건 해석에 있어 탄력성을 기해 면제청구 확대

나. CCTV 등 감시장비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

-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강화
 - 2007년 4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향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의 범위를 “화상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처리되는 화상정보를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은 범죄예방·수사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
-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위반 시 처벌규정)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 안내판 설치 등 조치 의무화(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등)

- 2006년부터 시행된「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2007년)
- 2008년 이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침의 보완 등 추진

- 민간부분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 2006년 7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
 - 2007년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07년 하반기 사업자협회 등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침 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침의 준수 지도
- 노사협약에 의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 2007년 1월 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공포(2007년 7월부터 시행)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노사협약회의 협의 사항에 추가하고, 근로자 위원이 관련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

- 향후 제도 개선 내용이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홍보와 지도감독 실시

다. 교정시설 내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사전허가제 폐지

- 2006년 4월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 교정시설의 장이 서신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여 원칙적으로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않도록 규정
-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집필이 가능하던 집필에 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집필 허용

라.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또는 명예 보호 강화

-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예방·구제책 마련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 2007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2007년 7월부터 시행)

-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제한적 의무화(공공기관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 대상)
-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정보 유통 금지 의무 규정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의 정보삭제 등 요청을 받았지만 그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해당사자의 다름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 도입
-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조정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명예훼손조정부' 설치
-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위한 권리침해이용자 관련 정보 제공 청구 규정 마련

마.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도 개선

-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 2006년 3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같은 해 9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단순 부정사용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일반에 적극 홍보
- 공공기관의 법정서식 개선
 -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법정서식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 관행 개선
-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자 하는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점검 등의 내용 법제화 추진

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공공·민간 분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 활동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정보통신, 금융, 의료, 교육, 행정 및 공공 등 각 분야의 관련법령 정비

사.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제도화 추진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진단·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로서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
 - 2008년 이후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검토

아.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의 강화

-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006년 말 건강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자료(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2007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제정 및 『의료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본인 또는 지정대리인에 의한 건강기록 열람 및 정정 요청 원칙, 건강기록생성기관의 본인 동의 없는 외부 제공 금지 원칙, 건강기록 제공·수집에 대한 본인 동意的 철회 규정 등 규정
- 건강기록생성기관(의료기관·약국 등), 건강기록취급기관(질병관리본부·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시민단체, 학계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건강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 조정 및 건강기록 보호지침을 심의하도록 함

-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정보 보호
 -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한 '건강진단개인표'는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에게 직접 송부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결과 중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건강진단기관이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
 - 200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08년 개선된 건강진단 결과 통보 방식 시행

V.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헌법 제22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8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종교 및 신념의 변경의 자유
 - 종교적 행사 및 선교의 자유
- 자유권규약 제18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종교적 행사 및 선교의 자유
 - 종교 및 신념에 대한 강제 금지
- 아동권리협약 제14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vi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병역법 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2001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약 3,59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그 중 약 86%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의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 한편으로 입법자에게 국가안보라는 공익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대안이 있는지 여부 및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 여부를 숙고하도록 권고(헌재 2004. 8. 26. 2002헌가1)
 - 2004년 9월 임종인 의원,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발의
 - 2004년 11월 노회찬 의원,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발의
 -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 남북분단 및 군사적 대치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병역의무 거부에 대한 부정적 국민정서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의 인정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존
- 과거 인권침해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2004년 10월 최용규 의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발의
 - 2004년 10월 노회찬 의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발의
 - 2005년 4월 장운석 의원,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의 각 규정에 대하여 대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해석 하에서 합헌이라는 입장임

- 군인의 종교활동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군인의 종교활동을 인도할 군종장교가 3대 종단으로 한정되어 군대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행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중·고등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사립 중·고등학교가 종교교육, 일반교육 및 학교행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 특정 종교교육이나 특정 종교의식을 타 종교신자인 학생이나 무종교인 학생에게 사실상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진지한 시도 권고(제9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권고(제8항)
 -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 권고(제9항)
 - 일부 수용자에게 석방을 위한 조건으로 부과되는 준법서약제의 폐지 권고(제15항) : 2003년 준법서약제 폐지로 국내 이행됨
-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면제권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의 채택 및 자유권규약 제18조와 일치하는 법 제정 권고(제17항)
 - 국가보안법 제7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형벌이 자유권 규약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 권고(제18항)

4 쟁 점

-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 국가보안법의 폐지, 개정 또는 남용 방지
- 군인의 종교의 자유 보장
-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관련 검토

-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06년 4월부터 법조계·언론계·종교계·체육계·예술계를 아울러 민관 공동으로 대체복무제도개선연구회를 구성
 - 병역거부자의 진술 청취, 전문가 의견 청취,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
 - 논의 및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 예정
-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

나. 국가보안법의 남용 방지

-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 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
-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하여는 현재 폐지법안과 일부개정법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원만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군인의 종교 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선택권 보장

- 병영내 종교활동 활성화 지침의 지속적 시행
 - 200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영내 종교활동 활성화 지침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 장병의 종교행사 및 종교선택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
 - 영내에 종교시설이 있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외의 타 종교 신자들에 대하여는 종교별로 신자가 2% 이상일 경우 민간성직자를 영내에 초청하여 종교행사를 실시하고, 신자가 2% 미만일 경우 외부 종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함
 - 다만, 신병교육대나 기초군사 훈련부대의 경우 영내에서 종교행사를 실시

- 3대 종단으로 한정된 군종장교 임명대상 확대
 -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군종장교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음
 - 2006년 3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원불교의 군종분야 편입을 허용
 - 2007년 7월 원불교 군종장교 선발 예정
 - 공정한 군종분야 편입을 위한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검토 중

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 종교 과목 개설 시 종교 이외 과목 복수 개설
 - '200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된 바와 같이, 종교 과목 개설 시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향후 교과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포함 시킴

VI.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제20조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 결사에의 소속 강요 금지
-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1조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 평화적 집회의 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5조
 - 표현의 자유
 -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viii)목, (ix)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공공기관의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
- 국민 대다수가 전문·추상적인 법령용어와 어려운 한자표기, 일본식 표현으로 인해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
- 장애인의 경우 방송이 정보접근 및 여가활용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막방송을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로 인식하여 충분한 배려가 부족
- 제도 미비 및 홈페이지 제작자·관리자의 인식부족으로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확보 수준이 낮은 실정이고 인터넷 이용이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개연성이 큼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불합리한 규제,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 행정편의적 관행 등으로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과 왜곡된 집회·시위 문화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실행에 대한 제한을 보다 축소하는 조치 권고
-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의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의 효과적 향유를 위한 노력 권고(제26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학교운영규칙 개정 권고(제37항)

4 쟁 점

-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장애인의 방송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자막방송 확대
-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 2007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개정보의 범위 확대
 - 공개대상 정보의 자발적 공개 의무화, 비공개정보에 대한 공개 재분류 절차의 제도화, 정보목록의 범위 확대 등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 국민의 정보접근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공표를 활성화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의 지속 추진

- 2006년부터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 수준을 목표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추진
 - 2007년부터 매년 알기 쉽게 풀어쓴 법률 개정안을 200건 이상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까지 1,150여 건의 법령 정비 완료 예정

라. 자막방송의 확대 시행

- 자막방송을 지상파3사(KBS, MBC, SBS)의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 시행하고, 향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EBS 및 지역지상파, 공공채널, 공익성채널 등 뉴미디어로 확대

마.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웹 접근성 준수 제도화
 - 공공부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007년)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개정
-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 개발
 -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지침(안) 마련
-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웹 접근성 교육 확대 추진

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합리적 운용

-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 노력
-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성화시켜 경찰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익충돌 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집회·시위를 관리

VII. 참정권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제130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1조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를 통한 참정권
 -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
 - 보통·평등선거
 -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
- 자유권규약 제25조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를 통한 참정권
 - 보통·평등선거, 비밀투표
 -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이 보장된 진정한 정기적 선거
 - 동등한 조건 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권리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제(가)호, 제(나)호
 - 선거·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공기구에서의 피선거권을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
 - 정책입안·정책시행에의 참여, 공직담당 및 공무수행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제(c)호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장애인유권자 및 투표소가 원거리인 농어촌지역 유권자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대두
- 최근 외국 파견근무자 및 유학생의 증가와 해외여행의 일상화에 따라 해외체류 국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부재자투표 실시 요구가 점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필요
- 여성의 공직임용을 확대하여 공직 내 여성대표성을 제고할 필요
-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직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
-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재의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적극적 평등조치가 요구됨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정치·법조 및 경제 분야 내 여성의 효과적 참여 증진에 필요한 법적·실질적 조치 권고(제10항)
- 국회 및 사법부 내 고위직에서의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권고(제10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여성의 정치적 참여 및 정치적 교육의 증진, 여성지도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제고, 목표제 및 할당제 장려의 지속, 정당 내 최소 30%의 여성대표할당제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제공 그리고 사법제도 내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입안 권고(제377항)

4 쟁점

- 장애인유권자, 재외국민 등의 투표권 실질적 보장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성별, 장애,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장애인유권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편의 제공
 - 거소투표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부재자신고 안내문 발송
 -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투표편의시설 지원(투표소 1층 설치, 임시경사로 설치, 장애인용 기표대 설치, 투표도우미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내 부재자 및 임시투표소 설치, 장애인 차량 및 활동보조인 배치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 규모 장애인단체와 사전 협의 후 장애인에 대한 선거편의 제공 대책을 확정·시달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선거 편의 제공 대책을 강구·시행

- 농어촌지역 유권자에 대한 편의 제공
 - 투표소가 원거리인 읍·면지역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 순회 셔틀버스 운행방안 강구

나.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해외체류자 국외부재자투표제' 도입

- 2006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외체류자 국외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공관원·상사원·유학생·여행자 등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외국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여행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투표 대상자'를 대상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공관이 설치된 지역 중 국외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에 거소를 둔 국외부재자는 국외부재자투표소에서, 국외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소를 둔 국외부재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국회 논의 시 입법지원활동 예정

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2006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확대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로 확대하고 선거운동방법도 확대
- 정당 및 유권자의 인터넷홈페이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정당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국회 논의 시 입법지원활동 예정

라. 양성평등에 기초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 여성공천할당제의 개선 검토
 -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 한하여 적용되는 여성공천할당제 위반 시 등록 무효 규정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시 반영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 2006년 5.4%인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추진
 - 공무원채용시험에서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 30%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를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 합격시키도록 추진(2003년~2007년)

마. 장애인에 대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 2% 달성 추진
 - 200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이 32%에서 84%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률 재달성 추진
-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 도입 및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바. 지방인재에 대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실시
 -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 20%에 미달하는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지방인재를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 합격시키도록 추진(2007년~2011년)

VIII.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1 국내적 기준

헌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7조, 제8조, 제10조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
- 고문방지협약 제13조, 제14조
 - 고문피해 주장자의 진정권 및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받을 권리
 - 진정이나 증거제공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 고문피해 구제 및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
 - 고문피해자의 사망 시 피해자 부양가족의 배상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 권한 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조치
 -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아동권리협약 제39조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2항
 - 법원 및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a)호, (b)호, 제6조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법원 및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권한 있는 법원 및 국가기관을 통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 보호·구제 보장
 - 인종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할 권리 보장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 등의 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재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일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 없다는 등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

- 군사법원제도에 관하여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이 각 군 지휘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군사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권제도와 법관이 아닌 심판관이 평상시에도 법원을 구성하는 심판관제도가 인정되어 있어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일련의 군대 내 인권침해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군대 내 인권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 종래 군과 관련된 고충민원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과 관련된 고충민원은 청문감사관제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해왔으나 이러한 내부적 고충처리제도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제기
- 사회의 복잡·다양화 및 국민 욕구표출 기회 증대로 점증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종래의 해결기법만으로는 사회적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음
- 복잡한 정부 조직 및 전화번호 체계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국민의 이용 불편과 함께 정보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정부 민원서비스 활용 곤란 초래
-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인터넷망을 이용한 국민의 행정심판절차참여 욕구 증대
- 최근 새로운 유형의 행정작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대두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고문 주장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기구의 지체 없는 설치 권고(제14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소 1인의 아동권리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거나 아동권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 권고(제18항)
 - 아동학대·방임사건 진정을 접수·감독·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국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 권고(제45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권고(제373항)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위한 방안 제고 권고(제373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금지협약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성에 대한 고려 권고(제231항)
 - 인권(특히 인종차별문제와 관련된)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발전에 대한 고려 권고(제231항)
 - 국내법 상 차별의 원인으로 인종을 누락시킨 것을 개정하는 조치 권고(제232항)
 - 차별을 예방하는 조치 채택 고려 권고(제232항)
 - 형법상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 고려 권고(제232항)
 - 차별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독립적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구 창설 고려 권고(제233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법률에서 차별의 원인으로 인종이 누락된 것을 교정하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조치 권고(제18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15호(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강제성 관련)에 대한 고려 권고(제19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협약 제2조 및 제4조가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조치 권고(제14항)
 - 1999년말까지 제정될 예정인 인권법이 인종·피부색·가문(혈통)·출신국가나 출신민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러한 차별행위를 불법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것 권고(제14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규정에 관한 기존의 구제제도(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진정절차 포함)에 대한 용이한 접근 제공 권고(제18항)
 -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제공 권고(제19항)
 - 취약계층의 구제제도에서의 접근 촉진 권고(제19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권고 15호에 따른 국내법의 재검토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따른 인종차별 및 인종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 입법 권고(제9항)

4 쟁 점

-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 군대 내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마련
- 군·경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
-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 통합적 민원안내서비스 구축
- 쉽고 편리한 행정심판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대상 확대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 2007년 4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향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 대상범죄 확대
 -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신청권자는 고소권자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로 제한
- 검찰항고전치주의 도입
 - 남신청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 이전에 검찰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 심리기간 연장
 - 재정신청의 처리기간을 현실화하여 3개월로 연장
- 비용부담제도 도입
 - 남신청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거나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
- 공소시효의 정지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나.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 2005년 12월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2006년 1월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국회 통과 및 시행 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 고등군사법원 및 지역군사법원의 설치
 -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
- 심판관제도 폐지
 - 일반장교가 재판에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
- 관할관제도 폐지
 -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결과의 확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부대 지휘관인 관할관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고 각 고등군사법원장 및 지역군사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와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도록 함
- 군판사의 소속 및 인사
 - 군판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하고, 군판사의 임명 및 인사는 국방부장관으로 일원화하되 군판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전시·사변시 보통군사법원 설치 특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 국방부와 각 부대별로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

다.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 군대 내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 금지사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범력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장병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각 군 본부에 인권과(육군, 2007년 4월 1일부터 기운영)를 설치하여 인권상담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침해조사 및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
- 신설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를 통해 영장징계처분의 사전적법성 심사와 징계항고 조력 업무 수행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군사·경찰 고충민원 처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군사·경찰 고충민원 처리
 - 2006년 12월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군사·경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 개시
 - 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 및 일반 국민의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담당
 - 경찰팀은 경찰기관의 처분 및 경찰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고충민원 담당
 - 전담조사팀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일반공무원, 외부전문가, 현역 군·경 조사관의 비율을 1:1:1로 유지

마.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에서부터 조정·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유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 조정회의의 확대 및 정례화
 - 조정 활성화에 따라 실질적 민원 해결로 사회 갈등이 감소하고 예방효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바. 민원통합 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

-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업무 관련 모든 민원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축
 - 대표번호 및 명칭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단순사항은 직접 상담 안내하고, 전문사항은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처리
 - 2007년 3월 30일부터 6주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2007년 5월부터 정식서비스 개시

사. 온라인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정비
 - 온라인행정심판청구환경의 지속적 개선
 - 2007년 행정심판청구시 문서이송, 사건처리현황 등에 대한 문자전송서비스 확대
 - 2009년 온라인 처리대상 행정기관 확대

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 확대

-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처분과 부작위 개념을 확대
- 청구인 적격의 범위도 확대

- 2007년 개정안 제출 예정
-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행정소송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

제 3 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3

- I. 교육을 받을 권리
- II. 근로의 권리
- III. 근로3권
- IV.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 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VI. 건강·보건 및 환경권
- VII.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 VIII.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1. 교육을 받을 권리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1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의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능력에 따른 동등 개방
 -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
 -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우선권
- 자유권규약 제18조 제4항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신념에 따른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4조
 - 교육권
 -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발전 지향,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모든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민족·인종·종족·종교간 이해, 관용 및 친선의 증진,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
 -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중등교육(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 포함)의 점진적 의무교육화 및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점진적 의무교육 및 능력에 따른 동등 개방, 기본교육의 장려·강화
 - 학교제도의 발전 추구, 연구·장학제도 수립,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 개선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학교선택의 자유 및 그 신념에 따른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자유(교육의 원칙 및 국가가 정하는 최소기준과 일치하는 요건 하에서)
-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 아동의 교육권
 -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중등교육(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포함)의 발전 장려 및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능력에 따른 일반 개방
 - 아동의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에 대한 이용 및 접근권
 -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 장려 조치
 - 학교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의 존엄성과 합치하도록 보장
 - 아동교육의 목표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삶 영위를 위한 준비,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자유(아동교육의 원칙 및 국가가 정하는 최소기준과 일치하는 요건 하에서)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제14조 제2항 (라)호
 - 교육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확보(직업지도·학문연구접근·학위취득 조건 동일 보장, 동일 교과·동일 시험·동질 교사진·동질 학교시설 및 설비에의 접근 보장, 성역할 고정관념의 배제 보장,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수혜 기회 동일 보장,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회 동일 보장, 스포츠 및 체육 교육 참여 기회 동일 보장, 가족건강 및 복지에 유익한 구체적 교육 정보에의 접근 보장)
 - 여학생 중퇴율 감소 보장, 조기학업중단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 마련 보장
 - 시골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훈련 및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 확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가. 국내현황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권리보장이 미흡하여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도 대책 필요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 빈곤가정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
-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아동은 계속 늘어남에 비하여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과정별 학급설치가 불균형하여 통합교육의 연계성 보장이 미흡
- 학생활동 관련 학교 내 교육정책 결정시 학생 의견을 반영할 필요
- 학생 징계 시 당사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적법 절차 이행 필요
-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사·산업체 모두 이를 일시적 아르바이트나 저임금 단순대체인력 활용으로 인식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실습현장에서는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 발생함
- 학교 주변에 위험시설, 향락·오락시설 및 혐오시설이 난립하여 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
-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교중도탈락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과 학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일부 면허 또는 자격 취득 등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교육 부문의 문제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불리한 계층(특히 여성)의 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확장된 고등교육 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권고(제21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 제13조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에 부합하고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공교육시스템 강화 계획 수립 권고(제42항)
 - 공교육시스템 강화 계획의 요소 : 무상 의무 중등교육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기한 설정,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의하여 저소득계층에 부과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교육과의 관계에서의 공교육시스템의 기능 및 품질의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의 학교의 접근성 연구, 사회 모든 영역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재평가(제42항)
-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규정된 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검토 권고(제29항)
 -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비추어 모든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 권고(제22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장애아동(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포함)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와 이를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 수요 및 교육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평가 권고(제51항)
 - 장애아동의 공공건물 및 장소(학교 및 여가시설 포함)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권고(제51항)

-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에서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의 수 증대 권고(제51항)
- 학교에 제공되는 물적 재원의 증대 및 수업의 질 향상으로 사립학교와 비교하여 낮은 공립학교의 질 향상 권고(제53항)
-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 비용의 절감 및 배제를 위한 기한이 설정된 계획 개발 권고(제53항)
- 여학생의 입학률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적 고정관념을 다룸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따라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권고(제53항)
- 경쟁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 및 교육의 목표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에 기술된 교육의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정책 재검토 권고(제53항)

4 쟁 점

-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학력 향상 방안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 학생생활규정의 정비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한 현장실습 제도의 정착과 노동력 착취 및 인권침해 문제 등의 사전 예방
-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 학교중도탈락자를 위한 교육기회 마련
-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에 대한 차별 해소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책임제 지속 추진

-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의 책임지도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 지속적인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파악 및 지원

나. 저소득층·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무료 급식 제공
 - 2011년까지 77만명, 약 2,541억원까지 지원 확대
 -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급식지원상담창구” 운영
- 농산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 현재 초등학교에 한하여 도서벽지 학생은 식품비 전액, 농산어촌 학생은 식품비의 1/3 지원
 - 2007년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추진

다. 장애인의 교육 보장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
 - 2007년 4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국회 통과
 - 향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 장애 조기발견 체제 구축
-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과 고등교육 과정의 의무교육 순차적 실시
- 대학 내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편의 제공
- 장애 성인의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 장애학생 교육시스템 혁신
 -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 기본인프라 구축(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 교육교사를 통한 교육기회 제공)
 - 2010년까지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기초자치단체에 1,252개 특수학급 증설
 - 20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완료
 - 장애특성에 따른 평가방안(지필평가, 평가시간 연장 등) 개발, 보급
 - 교대·사대 교원양성대학에 장애인교육 관련 강좌 개설 의무화
 - 특수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마련
-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 지역 교육청 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이동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확대 및 자질 제고
 - 장애학생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제’ 신설 및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대 배치
 - 특수교육 현장지원 확대를 위한 국립특수교육원 기능강화

라.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추진

- 2007년 각급 학교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추진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활동 관련 교육정책 심의 시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추진
 - 학생 징계 시 징계대상인 학생의 소명기회 부여 추진

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 시·도 조례 개정 추진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판단기준 및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
 - 관련규정 위반업소 폐쇄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의무화

- 2007년 4월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2008년 4월부터 시행)
 - 향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제도 도입
- 학교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구체화
-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바. 학교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이외의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 대안교육 활성화 추진
 - 대안학교 법제화
 - 대안교육 연수 실시
 - 대안교육시설 교육기자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의 지속적 추진

- 2006년 5월 마련한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운영 정상화 방안’의 지속적 추진
 - 학교·학생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현장실습 운영형태 및 시기의 다양화
 - 경제적 목적의 아르바이트형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전면 금지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 한하고, 간접 고용형태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금지
 - 단위학교별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습과정에서 노동력착취, 인권침해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파견 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아.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 마련

-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에 대한 분야별 차별 실태 조사를 거쳐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 요청
 - 2007년 법령 개정 요청

II. 근로의 권리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 근로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동일노동 동일보수를 받을 권리
 - 근로자와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 및 여가에 관한 권리
- 사회권규약 제6조, 제7조, 제10조 제3항
 - 근로의 권리(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 포함)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공정한 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여성에 대한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 보장,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사회권규약의 규정에 상응하는 수준의 생활을 제공하는 보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 정기적인 유급휴일)
 - 아동의 경제적·사회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 아동의 유해노동에의 고용 차별
 - 아동 유급노동연령 제한 및 위반 시 처벌

- 아동권리협약 제32조
 - 아동에게 유해한 노동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마련, 고용연령과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 고용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확보(근로의 권리,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고용보장·서비스의 모든 이익과 조건에 대한 권리, 직업훈련·재훈련을 받을 권리, 동등 보수권, 노동가치 평가에 있어서의 동등 대우, 동일 노동가치에 대한 동일 대우, 유급휴가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건강보호권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의 안전권)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근로,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용불안과 함께 임금, 사회보험적용률, 교육훈련 기회 및 복지혜택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
-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고 있는 바, 노동관계법상 보호는 물론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업법 등의 보호도 미흡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도 개선 요구가 증대

- 도급계약의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법적 성격이 다양한 가내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낮은 복지체감도, 정부지원에 의한 고용영향률 미미, 고용촉진기금의 재정적자, 고용·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 비체계적 직업교육 등의 문제가 지적됨
-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으며, 고용의무사업장에서도 여성장애인 고용율은 매우 낮음
-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등을 통해 고령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필요
- 신규채용이나 정리해고 시 연령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연령을 중요사유로 고려하는 등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대기업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휴가·휴일 등 휴식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
- 농림업·수산업·축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을 제고할 필요
- 퇴직급여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
- 산업재해예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부실하고, 안전보건관리 완화 이후 산업재해예방의 실효성이 낮음
- 이주노동자는 낮은 환경과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작업 중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큼
-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은 정규직과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여 직업능력개발의 양극화가 심각함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 및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채택 권고(제12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자유권규약 상 권리의 향유 보장 권고(제12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작업장 내 안전 및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의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기업으로의 확대 권고(제19항)
 - 모든 근로조건 개선의 국내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적용과 현재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 존재하는 차별적 관행의 철폐 권고(제19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재검토 및 사회권규약에 따른 권리 보장 권고(제38항)
-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의무교육 연령에 맞추어 최소고용연령을 상향하는 입법적 조치 채택 권고(제22항)
 - 아동 노동의 영역에서 아동권리협약 특히 제32조를 입법 및 관행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권고(제30항)
 - 고용허가를 위한 최소연령에 관한 ILO협약 제138호의 비준과 이를 위한 ILO와의 협의 권고(제30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민간부문의 특히 비전통적 영역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장려 권고(제377항)
 - 사회보호계획 내에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수에 관한 통계자료 제공 권고(제379항)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 이행 및 여성의 무급노동(의 가치) 인정 권고(제379항)
 - ILO협약 특히 제110호 협약(농장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 및 제111호 협약(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에 관한 협약)의 비준 권고(제379항)

- 성별제한적 모집 및 광고 금지 권고(제379항)
- 농촌여성에게 농업노동자로서의 인정(근로기준법 상 권리의 혜택을 받도록), 의사결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혜택을 주는 정책 및 프로그램 보장 권고(제381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상의 차별에 대한 추가 조치 권고(제16항)

4 쟁점

-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의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책 마련
- 가내근로자의 권리 보호
-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
-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
-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 금지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농림업·수산업·축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 제고
- 4인 이하 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마련·시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 2006년 12월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부터 시행(단,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과 관련한 규정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2007년 7월,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9년 7월 부터 시행)

- 2007년 6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까지 제한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신청 :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서면명시 규정

●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 2006년 12월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단, 차별금지규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과 관련한 규정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시행)

- 2007년 6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근로자파견기간의 제한 : 근로자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되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금지사업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 부담
 - 차별적 처우 금지 :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신청 :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사업장 감독 강화
 -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의 실태에 관한 체계적 조사 및 분석 실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시행

- 2006년 8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통한 충실한 시행

-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인력·예산을 통합 관리,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조사 정례화(연 1회)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 비정규직 차별시정 안내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이 차별요인을 시정토록 지도
 - 저임금 단순노무인력의 노무단가를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단가 등을 현실화
-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감독 강화
 -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비정규직 인사노무담당자들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무관리 교육 실시

- 합리적 외주화(간접고용) 원칙 정립
 - 기관의 핵심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수행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주화 허용(일제점검 실시)
 - 외주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외주업체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하여 사후관리 강화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추진
 - 2006년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정부안 확정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애로사항 중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법적 보호방안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별도 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2007년)

- 일반적 보호대책 마련
 - 산재보험 적용,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공정거래법 적용, 약관법 적용 추진
 - 노동법적 보호 방안, 모성보호 및 성희롱금지, 실업급여 적용 여부, 기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연구 등에 대하여는 향후 검토 또는 중장기적 추진
- 직군별 보호대책 마련
 - 보험설계사 보호대책 : 부당해촉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자기계약 행위 금지, 보험료 대납 금지, 산재보험 적용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추진
 -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호대책 : 업무협약서 작성 권장, 골프장 이용질서 개선, 공정거래법 적용, 산재보험 적용 추진
 - 학습지교사 보호대책 :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적용, 산재보험 적용,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성희롱 예방 추진
 - 레미콘차차기사 보호대책 :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적용, 산재보험 적용 추진
 - 화물차차기사 보호대책 :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정·보급, 명예과적단속요원제 도입, 전용휴게소 확충, 거래단계 축소를 통한 부당한 운송료 인하 방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적용 추진
 - 덤프차차기사 보호대책 :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덤프트럭 허가제 전환,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적용 추진
 - 대리운전기사 보호대책 : 대리운전 법제화 관련 향후 검토 추진
 - 렉서비스 배달원 보호대책 : 허가제 도입 여부 관련 장기적 검토 추진

다. 가내근로자의 권리 보호

- 2008년 가내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2009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해외사례 수집
- 2010년 상반기까지 가내근로자 권리보호 방안 강구

라.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개선

- 의무고용제도의 재편
 - 2010년 현행 의무고용제도를 ‘직업적 장애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직업적 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의 고용은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를 통해 해결
 - 이를 위해 직업적 장애 개념 및 판별 기준을 수립
- 직업재활시설 재편
 - 사실상 보호시설화한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시설로 재분류하고,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만 보호고용시설로 분류
- 직업교육체계의 개편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특수교육기관·복지관 등을 연계하여 지역별 직업교육네트워크 체계 내실화
 - 장기적으로 특수교육기관의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관련 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수행
-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추진
 -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개발, 전략직종 및 직무 개발,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
 - 수화통역사 등 고용관리비용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여 활용함으로써 고용유지 도모

마.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 여성장애인의 직업교육 강화
 - 여성장애인이 다수인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네일아트, 화훼관련 직종, IT관련 직종 등을 발굴·보급

- 여성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프로그램 마련
 - 2007년부터 여성장애인가근로자의 고용상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성장애인가근로자 지정상담원제' 운영

바.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

- 고령자에 대한 국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책무 강화
 - 2007년 4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향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방식 개선
 - 2007년부터 고령자인재은행별 사업성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폭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운영실적 제고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수준 인상
 -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 인상 검토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확대
 - 2007년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개정
- 2007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고령자 참여 확대

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상 차별 금지

-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 모집·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 마련·홍보

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검토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 검토
 -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경영상해고), 퇴직금(퇴직연금),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육아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영세사업장의 부담, 감독행정의 능력 등을 고려하되, 논의 과정을 거쳐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자. 농림업·수산업·축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 제고

-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방안 검토
 - 2008년 실태조사 및 외국 입법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 2009년 이후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근로시간 적용 필요성 등을 검토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정착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2007년도의 적용실태를 면밀히 분석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정착 방안 검토

차. 퇴직급여제도 적용 확대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 확대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관하여 노사단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8년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
- 1년 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 확대
 - 1년 미만 단기간 근로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관하여 2008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2009년 이후 적용 여부 및 시기 등 검토

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강화

- 사망재해발생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제도 시행
 - 2006년 3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
- 중대재해발생시 보고기간 단축
 - 중대재해(1인 이상 사망, 2명 이상 3월 이상 요양필요 부상 또는 10인 이상 동시 부상·직업성질병)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대상 확대
 - 2009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적 확대
- 완화된 산업안전보건 규제 복원 및 의무고용제도의 재편
 - 2007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복원 범위 결정
 - 2007년 하반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도입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지원제도
 - 근로자 1인 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실수강료 지원
 - 200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 본 사업 실시

타.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 안전보건교육 지원
 -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취업 전 취업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 취업 후 외국인지원단체 등과 협의하여 자국어로 된 교육교재 및 교육용 비디오 제작·배부
- 안전보건 지도감독
 - 이주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또는 공정별 안전보건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부착 지도
 - 2007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부착 노력 의무화

파.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비 우대 지원
 - 사업주 훈련 시 훈련비 외에 임금 추가 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 활용시 우대 지원
 - 비정규직의 훈련참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지표를 정비·개발하여 비정규직 대상 직업능력개발 정책 지원 강화

III. 근로 3 권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3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4항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 사회권규약 제8조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 파업할 권리
 - 군인, 경찰 또는 행정부 구성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권 및 파업권에 대한 합법적인 제한 부과 허용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i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3권이 법적으로 규제받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상태임
- 초·중등 교원이나 공무원과 달리 대학교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
-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임원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노조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기업단위에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노동조합활동 관련 사항과 권리분쟁사항이 배제되어 있어 단체교섭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
- 제3자가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정·선동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노사자율성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배치된다는 문제 제기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직권중재제도에 대하여 노동3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위헌논란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속적 개선권고가 문제됨
-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한 입법계획의 지속 권고(제19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에 대한 특별한 고려 권고(제12항)
 - 고위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입장 재고 및 공무원노조 대표와의 대화 권고(제19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 및 기타 적용가능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파업권에 관한 법률과 규정의 즉각적 개정 권고(제17항)
 - 교사, 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권고(제17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파업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이용 중지 권고(제39항)
 - 공공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 자제 권고(제39항)
 -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의 법적·현실적 보장 권고(제39항)

4 쟁 점

-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 실업자의 노동3권 보장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완화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활동 등 근로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적극 지도·감독
-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노조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예방·감독 강화

나.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대학교원이 가지는 직무상·신분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보장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

다.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에 대한 검토

-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서 제외
 - 2006년 9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신규실업자의 노조가입 여부 등과 관련하여 노사간 견해차가 크고, 법 개정 시 실제 법 적용과 해석과정에 새로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개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
- 중장기적 검토
 -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따른 입법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라.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노조결성 및 노조선택의 자유를 보장
 - 노사정위원회에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논의의 틀을 구성하여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에 예상되는 교섭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등을 함께 강구

마.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은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 노사관계의 현실 및 교섭관행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획일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
 - 향후 교섭 및 파업관행 변화, 노사관계 질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판례 및 해석론을 통하여 확대 검토

바.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및 벌칙규정 삭제

- 2006년 12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포(2007년 7월부터 시행)

•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한 규정 및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사.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등 관련 규정 개선

- 2006년 12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포(2007년 7월부터 시행)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 필수유지업무 규정 신설
 -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그에 대한 정당한 유지·운영 의무 부담
 - 필수유지업무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가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되, 협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등에 관하여는 2008년 1월부터 시행

아.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 삭제

- 2006년 12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포(2007년 7월부터 시행)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 삭제
 -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을 '통보' 로 변경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삭제함

IV.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5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
 - 자의적 재산 박탈 금지
 - 자유로운 직업선택권
 - 자신이 저작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창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c)호
 - 자신이 저작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창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다)호, 제13조 (나)호, 제15조 제2항, 제3항
 - 남성과 동일한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권 확보
 -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의 남녀 동일 보장
 - 민사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이를 행사할 기회 부여,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일한 권리 부여
 -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 모든 계약과 기타 사적문서는 무효로 간주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v)목, (vi)목, (e)호 (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상속권을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
-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야 할 필요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장애인, 개인발명가, 소기업 등의 경우 지적재산권 분쟁 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함
- 비용 상의 문제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필수적인 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와 일반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필요
- 연간 100만건 이상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

4 쟁 점

- 장애인 창업 지원
-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 경제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 소비자피해로부터 소비자의 권리 보장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장애인 창업 지원

- 장애인에게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 융자대상자에게 장애인고용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일반회계, 복권기금을 통해 재원 다각화
- 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전대 지원
 - 자립의지는 있으나, 사업운영경험 및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영업장소와 창업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자립 촉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복권기금을 통해 재원 마련

나.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취업활동기간 중 3회의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용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에게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호간에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변경신청서를 처리하도록 완화

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속적 시행

-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에서의 대리인 비용 지원
 -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가 심판·소송 대리인 비용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의 경우 200만원 이내, 특허소송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 개인발명가, 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

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활성화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활성화
 - 2005년부터 개소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 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권리확보에서 특허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무료 상담지원
 - 향후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와 함께 소외 지역에 대한 순회상담 서비스 확대

마.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 2006년 9월 전문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시행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예방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2008년 1월 시행)
- 집단분쟁조정제도
 -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집단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집단분쟁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

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 확산

- 기업들이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할 수 있는 내부체제를 갖추어 실행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시스템(CCMS)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
 - 2007년부터 CCMS 평가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마크 부여 시행

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4조, 제35조 제3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제1항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
 -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기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
- 사회권규약 제9조, 제11조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 기아로부터의 해방
- 아동권리협약 제26조, 제27조 제1항
 - 아동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마)호, 제13조 (가)호, 제14조 제2항 (다)호, (아)호
 - 사회보장권(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무능력의 경우) 남녀 동일 보장
 -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의 남녀 동일 보장

- 시골여성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직접 수혜권 확보
- 시골여성의 적절한 생활조건(주거, 위생, 전력·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관련) 향유권 확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iii)목, (i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개선했음에도 재산 소득환산율이 높게 설정되었고, 최저생계비 기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며, 최저생계비 산정 시 가구별·지역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 가구나 대도시 저소득층 가구의 적절한 생계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지적이 계속됨
- 종래 국제결혼이민자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곤한 생활을 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 면허가 없는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산업재해로부터 더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인정기준이 추상적이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어 신속·공정하게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 제기
- 산업재해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일당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 수준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현행 지정계약제도 하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일부가 산업재해지정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여 산업재해근로자가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산업재해근로자만이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요양신청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사용자의 직·간접적 압력으로 요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산업재해근로자의 적절한 요양신청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구직급여 만료 후에도 생계가 어렵거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연장지급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생계지원에 다소 부족함
-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간 실직 상태에 있게 되어 사실상 비자발적 실업에 준하게 된 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참여가 미흡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된다는 비판 제기
- 농작업·교통·재해 등 사고로 인하여 농사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고농가나 정상적 가사활동이 어려운 고령·취약 농가에 대한 도우미 지원제도의 시행 필요
- 경제침체로 전기요금 체납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률적인 전기공급 중단을 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여름철 및 겨울철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됨
- 취약계층이 경제적 사정으로 가스·전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후불량한 가스·전기시설을 무료로 개선하고,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낙후지역 주민은 간이상수도, 소형관정, 계곡수 등에 의하여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으나, 가뭄 시 쉽게 고갈되고, 오염물질 등 외부 영향에 민감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 확보 곤란

- 건강을 추구하는 국민 식습관의 변화와 농약과다검출사례, 학교급식파동, 조류독감, 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저소득층, 취약집단, 한계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 부족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 전면적 철거 후 개발방식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민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 위협, 기존 커뮤니티 파괴, 재정착률 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 사회복지서비스에의 동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고려 권고(제12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주거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한,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4호에 따라 대체 주택의 제공 없이 퇴거가 실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권고(제20항)
 -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의 한계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속한 확대 권고(제22항)
 - 극빈자, 무주택자 및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권고(제22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한 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 권고(제41항)
 -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보호 제공 권고(제41항)
 - 취약집단 혹은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 보장(제41항)
 - 노숙자 또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특히 기준 미달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즉각적 조치 권고(제41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도록 국내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 권고(제59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1955년 실업보험계획에 의해 장애여성에게 부여된 사회보장권의 실현에 대한 특별한 고려 권고(제384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모든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특히 개인의 안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치 지속 권고(제10항)

4 쟁 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국제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 실업급여 연장지급 제도의 활성화
-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제도의 의사결정과정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고농가 및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도우미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 전기공급을 통한 기본적 생활 지원
-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 환경 조성
-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 공급

- 농축수산물 및 식품 안전
- 저소득층, 취약집단, 한계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공간 확보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
- 기존 주민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시행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합리적 최저생계비 결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인상으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지속 추진
 -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 개별급여체계 도입 검토 및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별급여체계 도입방안을 검토
 - 공공부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면밀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

나.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속 추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그 외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향후 제도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실시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2006년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정부안 확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적용
-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도사,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같이 일신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 사업장 단위로 당연 적용하되, 종사자가 제외신청시 예외 인정
- 보험료는 사업자가 납부하되 1/2은 종사자가 부담(단, 골프장경기보조원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

- 향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 소규모 건설현장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이 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공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이들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적용방법, 소요 자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용 시기, 방법을 결정할 예정

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
 - 2007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상설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
 -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기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및 업무지침 등 마련
 - 새로운 직업병에 대하여는 전반적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단계적 기준 마련
- 저소득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 현재 산업재해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2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보장성 강화 추진
- 산재보험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추진
 - 산업재해근로자가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추진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의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정계약제를 유지하되,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
- 산업재해 미인식 근로자의 구제 강화
 - 요양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사업주 확인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도록 하되, 사업주 확인이 없는 경우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명문화
 -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하여 재해발생 후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안내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기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마. 실업급여의 혜택 확대

- 실업급여 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
 - 취업이 곤란한 계층에 대한 훈련연장급여 확대로 취업능력 향상 도모
 - 신청절차 제도 개선 및 요건 완화
 - 연장급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청별 심의회 구성
-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추진
 - 장기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생계안정, 노동시장 참여와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구체적 방안 및 시행시기 결정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비정규직 참여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비정규직 참여 확대
 -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위촉 시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추천을 노동계에 요청
 - 향후 전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단체가 발족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 추진
-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비정규직 참여 확대
 -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위촉 시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추천을 노동계에 요청
 - 향후 전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단체가 발족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 추진

사. 사고 농가 및 농촌고령가구 등에 대한 도우미 지원

- 사고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 농가의 69세 이하 농업인이 치료기간 2주 이상의 사고를 원인으로 영농도우미를 요청하는 경우 치료기간 내 지원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평균 농촌임요금의 70%를 국비로 지원
 - 2006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0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연령도 65세에서 69세까지로 확대
 - 향후 지원일수를 30일까지 확대하고,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
- 농촌고령가구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 65세 이상 농촌고령가구 및 편조손가구와 65세 미만 농가 중 사고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 자원봉사자 등이 방문하여 세탁, 청소, 이·미용, 목욕, 주거환경 정비 등 가사활동 지원
 - 지역농협에서 지원대상 농가를 파악한 후 알맞은 가사일에 자원봉사자 방문 지원 시행, 자원봉사자에게 실비(1일당 10,000원) 지급

- 2006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07년 농촌지역 고령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2008년 이후 지원단가를 인상할 예정

아. 전기요금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 전기공급

- 전류제한기 부설
 - 단전가구에 전류제한기를 부설하고 단전가구에 최소 전기(220W) 공급
- 겨울철 및 여름철 단전유예 시행
 - 7월부터 9월,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단전을 유예함

자.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 환경 조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스시설 무료 개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LP가스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호스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기기 지원
 - 2007년 이후 약 20만 가구의 시설개선
- 취약계층 부적합 전기시설 개·보수
 -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독거노인세대, 모자·부자세대, 일반 영세세대, 사회복지시설, 집단주거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개폐기·차단기·배선 등에 대한 보수
- 저소득층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Speed Call) 제도 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용 시설을 대상으로 휴일 또는 야간 전기 고장에 대한 무료 응급조치 시행
 - 2007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전국 시행

차.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 지원

-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 시설 설치
 - 인구가 적고 분산된 낙후지역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상수도를 대체할 시설의 개발·보급

- 광역·지방상수도 등 용수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중 수혜가구 20호 이상인 7,751개소를 대상으로 수원공(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물탱크, 급·배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 공급
- 용수공급 시설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용수 공급 확보

카.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1)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
 - 새해영농설계교육, 안전성 조사 부적합농가에 대한 특별교육, 주산지 농업인에 대한 안전성 순회교육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
-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확대
 - 우수농산물인증제도와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안전성이 강화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함
-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안전성 취약품목 위주의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로 농산물 안전성 적합율을 98%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
-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확대 추진
 - 사료·도축·가공판매 단계에서 기 실시되고 있는 HACCP를 2007년에는 사육·보관·운반·집유 단계까지 지침개발·보급 완료 후 적용 확대
 -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적인 순회교육 및 도축장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사업 실시
-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 단계적 확대
 - 소의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를 2009년까지 국내산 소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화

(2) 수산물 안전성 강화

- 수산물 약품 관리방안 마련 등 생산단계의 안전성 강화
 - 수산물 약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상태 조사 및 등급설정
- “위생약정” 체결 확대 등 불량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 차단
 -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 위생약정 체결 확대
 -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비율 확대
 - 부적합 수산물 수출국 등록공장에 대한 수입중단조치
-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역량 강화 및 “품질인증제” 운용 내실화
 -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HACCP) 적용대상 확대로 위해요소 사전 차단
 -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이력추적제 확대
 - 품질인증기준 개편 및 적용품목 확대

(3) 식품 안전성 강화

- 인체위해 물질 중심의 관리 및 연구시스템 구축
 - 국민식습관에 근거한 맞춤형 위해평가 실시 기반 구축
 - 신속위해평가 제도 도입 및 운영
 - 안전기준 미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지속적 권장 규격 기준 마련
 - 인체 위해 우려 시 잠정안전조치 기준 마련
- 식품정보체계의 도입·시행
 - 식품안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식품안전평가위원회를 통해 식품관련 위해정보의 위험단계 구분, 각 위험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기준 개정
 - 영양표시 대상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확대하고, 의무 영양표시 대상을 당,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으로 확대

- 단계별 수입식품안전망 구축
 - 수입 전단계에서 위생취약수출국 현지 위생관리 강화
 - 수입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능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식품 거래내역 기록관리 의무화 제도’ 추진

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1) 국민임대주택 공급**

-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 제고
 -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전체 주택의 20%까지 제고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0% 이하인 1~4분위 계층에 대하여 시중 임대료의 50~80% 수준으로 공급
 -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약 10만호 수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 중

(2)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최저소득계층,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맞춤형 임대사업 추진
 - 입주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1순위), 장애인(2순위)
 -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 추진계획 : 2012년까지 매년 매입임대 6,500호, 전세임대 5,800호 공급 추진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무이자 전세주택 지원
 - 입주대상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료(만 20세 이후에는 주택기금 대출이자의 2% 부담), 최대 만 25세까지 거주 가능
 - 추진계획 : 2012년까지 매년 1,000호 공급 추진

- 자립의지가 있는 쪽방거주자, 노숙인 등 단신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시범사업 추진

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

-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 2010년까지 451개 구역에 국고 1조원 수준 지원
 - 기반시설비 국고 50% 보조(지방자치단체 매칭)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추진 검토
 - 공공부문이 정비구역 거점에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모텔주택 등을 건설하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개량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입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으로 시범사업 실시 추진

하. 순환정비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시행 유도

-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수립
- 순환정비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지원 검토
 - 정부구역 내외에 새로이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순환용 임시수용시설로 사용,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의 거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비 방식의 활성화 도모
- 광역적 개발구역 설정 및 순차적 사업 진행 유도
 - 기존의 단위사업별 전면 철거 사업을 지양하고, 광역적인 종합개발로 순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추진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광역적인 지구 지정 유도
 - 분할된 지구의 순차적인 개발(선행 지구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세입자, 원거주민의 임시수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식)로 전면철거로 인한 주거 불안정 해소

VI. 건강·보건 및 환경권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5조, 제36조 제3항

2 국제적 기준

- 사회권규약 제12조
 -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사산율과 유아 사망률의 감소,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33조
 -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치료·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 보장
 -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 제공으로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 산모를 위한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 보장
 -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예방 기초지식의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지원 확보
 -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 발전 조치
 - 아동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 폐지 조치
 -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아동의 보호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2조, 제14조 제2항 (나)호
 - 보건서비스(가족계획 관련 서비스 포함)에 대한 남녀평등에 기초한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보건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 시골여성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 확보
 -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한 적절한 서비스 확보(필요한 경우 무상 제공)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제(e)호 (i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중보건 및 의료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전국민 의료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의료 욕구별 반영수준이 미흡하고, 의료급여의 지원범위가 건강보험 범위와 동일하여 비급여로 인한 본인 부담과중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과의 차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 임신·출산 관련 보험급여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형아검사, 초음파 등 임신 과정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부분 존재하며 잦은 외래 방문, 불필요한 검사 가능성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존재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가 경제적 이유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생물학적으로 질병에 걸리기 쉽고, 특히 임신 중 질병은 유산, 사산,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어,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취약계층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한 국가적 영양관리의 필요성 부각

- 건강보험에 노인질병의 특성에 맞는 급여가 부족하고, 노인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음
- 노인복지법에 의한 건강검진사업이 주요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지 않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인건강검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제기
-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출현율이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조기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할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회피사업장에 대하여는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
-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
-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바, 다수의 학생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할 필요
- 호기심이 많고 사리분별력이 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마약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필요
- 2000년대 들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대기오염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함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에 따라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고, 교토의 정서 발효 등에 따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
- 연안해역 수질은 COD기준 II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오염우심해역의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오염이 진행되고 있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 서식지 훼손, 선박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양생태계 보호, 서식지 복원, 희귀생물종 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해양환경보전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소음·진동 민원이 급증하는 등 생활소음 피해가 심각하고 국민들의 웰빙 의식이 확산되면서 정온한 환경에 대한 인식 증대
- 대규모 개발사업의 급증으로 자연생태계 훼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대립으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 야기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저소득층 가정이 무료로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예산 증대 및 공공보건 시설 설치 권고(제49항)
 - 생후 6개월 동안의 유아에 대한 모유단독수유의 절대적 이점을 모에게 교육하고 장려하는 조치 및 모유수유에 대한 국내법의 채택 권고(제49항)
 - 특히 HIV/AIDS 기타 성병에 관한 교육, 10대의 흡연 및 약물남용 문제 등 관련 주제를 다루는 종합적 청소년보건정책 개발을 위한 청소년보건 연구 실시 권고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노인여성을 위해 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의하여 위협받지 않게 하도록 권고(제384항)

4 쟁점

-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 향상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 노인 환자의 특성에 맞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노인특화 건강검진도구의 개선 및 보급

- 치매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 강화
-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등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확대
-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 마약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 종합적인 환경보건정책의 시행
- 대기·해양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 친환경적 개발 추진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단계적 완화
- 비급여 본인부담 완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급여범위 확대
- 의료급여환자의 차별개선
 - 정신과, 혈액투석 등 일부 정액수가 운영 대상에 대하여 수가 현실화 및 중증도 반영

나. 임신·출산 Total Care 보험급여 추진

- 임신·출산 전과정의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2008년부터 임신·출산 전과정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험급여를 확대
 - 사전진찰·초음파·기형검사 등 임신 전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시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한 프로그램 개발

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실시
- 영유아 외래 진료비 경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종목 수 확대 및 환아 관리
 - 2006년 6종목으로 확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종목을 2008년까지 43종목으로 확대 추진
 -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의료비 지원
 -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퇴원 후 전화상담 및 방문간호 실시

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추진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의 전국 확대 실시
 -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소득과 영양위험을 가진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아 및 6세 미만 유아를 대상
 - 정기적 영양교육과 특정식품(조제분유, 이유식, 쌀, 김, 미역 등) 지원
 - 2005년부터 시행한 시범실시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보건소로 확대

마. 노후 의료보장의 내실화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말기 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 노인성 질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군 및 기능상태에 따라 등급화하여 1일당 정액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요양병원형 수가를 개발하고 보험수가에 적용 (2008년 본사업 예정)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치보철사업(70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등 노인구강질환 관리
- 노인 등 구강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방문하여 예방중심의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바. 노인특화건강검진(일차검진) 도구 개발 및 시행

- 노인특화건강검진도구를 개발하고 검진항목에 시력, 청력, 저작능력, 균형감각, 갑상선저하, 골밀도, 일과성 뇌허혈증상, 요실금위험, 낙상위험소지여부 등에 대한 측정이 포함되도록 구성
- 66세 생애전환기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사업과 연계 추진

사.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회관, 치매요양병원 등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조기진단, 등록관리, 상담기능을 대폭 강화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 보건지소의 노인방문사업과 연계하여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체계 구축
 - 치매상담전문요원 배치 확대
- 공립 치매병원 확충
 - 지역사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립 치매병원 건립 확대
- 집중적 사례관리를 통한 치료 및 보호 효과 제고
 - 2007년부터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 등에 대한 재가 돌보미 바우처(Voucher, 이용권) 제도 시행
 -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등 지원

-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재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 2006년 89종으로 확대한 지원대상 희귀질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본인부담금, 식대 요양급여 가산항목 본인부담금의 50%, 일부 질환에 대한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 지원
- 심터 건립 지원
 - 질환의 특성상 대도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요양심터 제공
- 국내 미허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 등재 추진
 -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 선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선정한 미허가 희귀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

자.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건강보험 가입 홍보 강화
 -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각종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여 가입대상자 중 누락자에 대하여는 가입 안내문 발송 등 홍보 강화 지속 추진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영세사업장 등 건강보험 적용 누락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안내장 발송 및 직권 가입 추진
 - 비정규직 등 가입 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추진

차.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에 대한 의료 지원

- 미등록 이주노동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시행 지속
 - 미등록 이주노동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입원 및 수술의 경우 지원

- 500만원 이내 일반질병은 전액 지원, 500만원 초과 중증질환은 해당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 제출에 따라 전액 지원, 1,000만원 초과 중증질환은 진료비의 80% 지원

카.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2007~2011년)의 충실한 이행
 - 학교급식의 운영 내실화,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 학교 식중독 사고 대응체계 확립, 급식계약 및 식재료 구매방법 혁신,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 확대, 정부·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음

-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강화
 - 전국 교육청 단위 '학교급식 점검단' 구성·운영 활성화, 학교급식 위생점검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학교급식법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환경 개선
 - 시·도교육청별 급식시설 현대화, 조리실에 냉방기 설치, 식당협소로 인한 3회전 이상 배식 및 중식시간 부족문제 해소, 학부모 도우미 강제동원 금지, 학생수저의 일괄관리 제공 등
 - 2007년 급식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 관리중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HACCP) 적용을 위한 표준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적용
- 급식종사자 교육 및 위생검사 강화
 - 학교급식 종사자 위생교육의 실효성 강화 : 학교급식 위생교육 이수기록제 시행
 - 식재료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6개월 단위 건강진단 의무화 : 건강진단 수수료 감면 추진

타.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및 단속 강화

-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방지
 -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마약 등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파. 환경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보건정책 시행

-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 각종 환경 위해요인의 국민건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위험인구 실태파악
 - 건강영향에 기반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매체별 오염관리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위험인구 감소 대책 추진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을 규명하고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조사
 - 산모, 영·유아, 폐광·산업단지 등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환경보건 기반 구축
 - 환경보건정책의 법적 기반으로 환경보건법령 제정
 - 중앙환경보건센터 설치, 환경성질환연구센터 지정·운영 등 환경보건 관련 조직 확충
 - 건강영향평가기법, 위해성평가, 정보체계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하. 대기·해양 환경 개선

(1)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개선

-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배출저감대책 추진
 - 울산·광양만 지역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지속 추진
- 환경친화적 교통·국토·에너지 통합정책 추진
 - 노후 경유차 등의 대기오염우심지역 통행제한 등 환경지역 지정 추진
 - 대기질을 고려한 교통수요 관리 추진
 - 도시 기후·대기질을 고려한 “도시기후지도” 개발 추진
 - 대기정책과 에너지정책 연계 추진
-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기존 및 신규 대기환경기준물질에 대한 기준 강화 추진

-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
 - 2007년부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 2007년부터 TMS 등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및 배출계수 개발
 -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검토
 - 2007년부터 하이브리드/연료전지/CNG 등 저공해차 보급 확대
 - 2007년부터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 지원 확대
 - 2007년부터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 지정을 통한 전문가 양성
 -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활성화 지원

(2)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추진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
 - 관리대상(해양생태계, 육상기인오염원, 해양기인오염원)에 따라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정책인프라 강화와 국제협력을 별도 분야로 구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 연안습지(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방안 마련
 - 해양생태계관리 및 복원사업의 실시
 - 해양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 육상기인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 오염물질유입 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실시
 - 육상기인오염원 처리시설 확충
 - 오염 우심해역 등 특정지역 적극 관리방안 마련
 -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전문성 확보
- 해양환경 개선 및 오염원의 예방적 관리
 - 오염해역의 정화사업 실시
 - 해양쓰레기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 적조 및 어장환경관리 고도화
 - 해양오염 대응 기술개발
 - 해상안전관리체계 구축

- 해양환경관리 정책인프라 강화 및 국제협력
 - 해양환경관리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 해양환경관리 제도기반 강화
 -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식기반 확충
 - 남·북한 및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거.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 생활소음 관리대책 추진
 - 2007년부터 전기이륜차 등 저소음차 보급 및 저소음포장 도로 확대
 - 2008년 철도소음 환경기준 설정 및 2010년 철도제작차 소음기준 설정
 - 2007년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비행경로 및 비행방식 개선
 - 2010년 공사 종류별·지역별 소음규제기준 세분화
 - 2008년 건설기계 소음표시의무제 도입·시행
 - 2007년 동일 건물내 사업장 소음진동규제기준 및 측정방법 마련
-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 2008년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개정 추진(철도소음 환경기준 마련, 소음규제 대상 확대 등)
 - 2010년 실시간 환경소음자동측정망 구축·운영
 - 2009년 일정규모 이상 도시별 소음지도 작성 추진
 - 2010년 저주파 소음진동 권고기준 및 측정방법 마련
 - 2009년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

너. 친환경적 개발사업 추진 유도

- 친환경적 개발사업 추진 지침 개발
 - 2007년부터 17개 주요 개발사업별(택지, 관광단지, 항만 등) 친환경적 추진 지침 개발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벌칙규정 등 강제조항 법제화 추진
 - 2008년 이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 단일화를 위한 통합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

VII.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9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
-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a)호, (b)호, 제2항, 제3항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
 -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 존중
- 아동권리협약 제31조
 -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 장려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조 (다)호
 -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남녀의 동일한 권리 확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v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 지역간 문화 향유의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체계를 구축할 필요
-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이나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문화적 양극화 해소 및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복지를 증진할 필요
-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의 필요성 대두
- 65세 이상 노인의 문화활동과 운동단체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며 여가생활 역시 TV 시청, 휴식 및 수면 등 소극적이고 활동성이 낮음
- 국제적으로 2007년 3월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내적으로는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 제기

4 쟁 점

-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 문화소외지역이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청소년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 노인의 문화활동 및 생산적 여가생활 활성화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 4대 문화기반시설 건립
 - 2011년까지 도서관 750개관, 박물관·미술관 619개관, 문예회관 250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 사립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
 - 2007년 130개관 지원
- 작은 도서관 조성
 - 2007년 70개관 조성
- 지역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2007년 105개 프로그램 지원
-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화 분야에 해당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컨설팅 사업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
 -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 지역축제기획 및 평가, 지역문화 상품 개발과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 지방문화원 중심 체험프로그램 지원
 -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예술을 육성·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 시설 개·보수 지원 및 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

나. 문화소외지역 또는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소외지역 문화나눔
 -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문화예술 접촉 기회를 갖기 어려운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나눔 활동 제공
 - 찾아가는 문화순회, 문학/전통/공연/전시 나눔, 지역문예기반시설 활용 예술프로그램 제공
- 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 문화소외계층 대상 편의시설 확충
 -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문화시설 건립, 리모델링 지원 시 고려
- 작은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 문화공간 조성
 - 작은 도서관 조성, 소외지역 생활문화환경 가꾸기,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 확대 및 개선

- 주말과 휴일에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을 위하여 주말 상시적으로 문화활동을 개최하는 정책
- 문화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즉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창의성을 제고시키는 문화존 장려
 - 전문가 자문 및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개선

라. 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고령인구가 다양한 실버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 바우처(Voucher, 이용권) 제도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
 - 한방의료센터, 온천 및 휴양림 등 고령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 조성
-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인의 역할 제고
 - 지역별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고령자 참여 기회 확대
 - 고령친화형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추진
- 노인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
 - 지방문화원 등을 활용하여 실버문화 노인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 향토 역사문화 해설가 등 다양한 자원봉사분야를 개발하고 재취업 기회 제공

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약』 비준 추진
 - 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개발 및 추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추진
 - 이주노동자 문화축제 개최 등 타문화 소개 및 이해 노력 확대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VIII.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6조 제1항, 제2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제16조, 제25조 제2항
 - 가정에 대한 자의적 간섭 금지
 - 성년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
 - 혼인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 남녀의 동등한 권리
 -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한 혼인 성립
 - 가정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호
 - 모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3조
 - 가정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가정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호
 -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
 -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한 혼인 성립
 - 혼인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
 - 혼인 해소의 경우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 조치
- 사회권규약 제10조 제1항, 제2항
 - 가정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
 -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혼인 성립

- 임신부에 대한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 보호 부여
- 근로임산부에 대한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 부여
-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나호 내지 마호, 제25조, 제27조 제2항 내지 제4항
 -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
 -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불법적 박탈 시 신속한 회복을 위한 원조와 보호 제공)
 -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부모와의 분리 금지(법률 및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분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외)
 - 부모와의 분리 절차에서 아동의 견해 표시권 부여
 - 아동의 면접교섭권(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기적 면접교섭유지권
 - 가정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부모 쌍방의 아동 양육·발전에 대한 공동책임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일차적 책임
 - 아동양육책임을 이행하는 부모와 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 아동양육을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 개발
 - 취업부모의 아동이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 적절한 방법에 의한 출신국 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국제입양 고려
 - 국제입양 아동에 대하여 국내입양과 대등한 보호와 기준 향유 보장
 - 국제입양 시 양육지정으로 인한 관계자들의 부당한 재정적 이익 금지
 -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노력
 -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양육지정된 아동의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의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

-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지원
-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부터의 아동양육비 회수 확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나)호, 제11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가)호 내지 (바)호, (아)호, 제2항
 - 모성에 대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발전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인식을 가정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 임신 또는 출산휴가 및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 종전의 고용·선임순위·사회보장수당의 상실 없는 유급의 또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 도입
 - 부모의 가족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및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양립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지원 제공(특히 아동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 촉진)
 - 임신 중 여성에게 유해함이 증명된 작업 유형에는 특별한 보호 제공
 -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보장
 -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 및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한 혼인을 할 권리 보장
 -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 동일한 권리와 책임 보장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관련 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 및 책임 보장
 - 자녀의 수 및 터울에 대한 동일한 결정권 및 그 실행을 위한 정보·교육·수단의 동일한 접근권 보장
 - 자녀의 보호·후견·재산관리·입양 또는 유사 제도에 관한 동일한 권리 및 책임 보장
 - 유·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취득·운영·관리·향유·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보장
 -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무효
 - 혼인 최저연령의 특정 및 공공등기소에의 혼인등록 의무화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i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민법이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
- 협의이혼 시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이상 법원이 양육자 결정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어,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
- 면접교섭권이 부모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자녀는 단순히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
- 산전후휴가의 경우 이용률이 기업규모 및 정규직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크고, 육아휴직의 경우 짧은 이용기간 및 낮은 수당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
-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핵가족화·저출산에 따른 가족 규모의 축소에 의해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남녀 모두에 대한 직장·가정의 양립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남성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참여가 미흡
- 국공립보육시설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중·소도시 이하 취약지역의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
- 정부의 재정지원이 집중된 국공립 법인 시설의 보육료는 저렴한 반면 민간 보육시설의 부모 부담 보육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어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
- 가족해체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한부모가족 아동의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종래 이루어지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혜택의 확대 요구 제기
- 미혼모 출산이 늘어나면서 미혼모 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지원이 필요

-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
-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 보호를 요하는 아동의 규모에 비하여 국내입양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국외입양 비율이 매우 높아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비추어, 소년과 소녀의 동일한 최소혼인연령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채택 권고(제22항)
 - 국내 및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규정과의 완전한 조화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법률 개정 권고(제22항)
 -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협약’ 비준 고려 권고(제22항)
 - 아동권리협약 제18조 및 제27조에 비추어 아동의 양육 및 발달에 관한 가족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보장 조치의 채택 권고(제27항)
 - 아동유기 예방과 아동가장 가족 예방 및 지원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제27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모두에 면접권을 보장하는 민법 개정 추진 권고(제10항)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에 대한 일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제10항)
 - 여아의 혼인가능연령을 남아의 혼인가능연령까지 높일 것 권고(제28항)
 -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 및 상담·지원시스템의 증대에 의한 그룹홈과 위탁양육제도의 수 확대 지속 권고(제41항)

- 가능한 경우 아동이 가정환경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아동의 공공·민간시설수용의 정기적 검토 권고(제41항)
- 사회복지사의 수 증원 및 대안양육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권고(제41항)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 특히 제21조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 및 해외입양제도 종합 검토 권고(제43항)
- 아동 또는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기반한 양육비지급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예,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지체된 양육비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기금 설립,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적으로 공제하는 제도 도입) 채택 권고(제47항)
- 수유여성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권고(제49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권고
 - 유급출산휴가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권고(제379항 (c))

4 쟁 점

-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일치
- 이혼 시 자녀의 양육환경 보장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
-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와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 제도화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과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확대
- 미혼모 및 그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
-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모·부자복지법』상 보호 제공
- 국내입양에 대한 지원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양성평등 및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한 민법 개정 추진

- 2006년 11월 양성평등 및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종래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일치
 -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함
- 협의이혼시 자녀의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 협의이혼 시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분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 재판상 이혼 시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양육자 등 결정
 - 재판상 이혼 시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용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 면접교섭권자에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 외에 재(子)를 추가 규정

나.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

-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
 -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부담 확대 검토
-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방안 검토
 -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 검토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요건 완화 : 2008년부터 만 3세(공무원의 경우 만 6세 이하 취학 전)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최대 3년(여성공무원의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2007년부터 월 50만원
 -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 육아휴직 이용의 유연화 검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전일제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방안 마련
- 모성보호제도 이용 여건 조성
 - 기업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지원 확대
 -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 지원
 -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지원 강화
 -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지도·근로감독 강화

다. 가족 돌봄을 위한 정책마련

- 아이돌보미 사업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가진 개별 가정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된 아이돌보미를 파견
 - 2007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
-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
 - 자폐,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나 소아희귀병 등 장기적·만성적 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도우미를 파견
 - 2007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
- 아버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 자녀 출산 시 아버지에게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부여
 - 2008년부터 3일간의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예정
-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Papa's Quota) 도입 검토
 - 육아에 대한 부모의 역할 공유기반 조성을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을 검토
 - 육아휴직의 사용 실태 및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 추진
- 학부모 저녁 모임 지원
 - 맞벌이 부부 및 아버지의 자녀 학교교육 생활 참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저녁 모임 지원
 - 2007년부터 시범 운영 실시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의 제정 추진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및 가족친화 인증제 도입, 가족친화마을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가칭)』의 제정을 추진
-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기관의 측정
 - 기관의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용도 측정을 통해 가족친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배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실시,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다양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추진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민간시설 매입, 도시공원 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매년 200~300개소를 확충하여 중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기준 30% 수준까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마. 무상보육과 보육료 감면 확대

- 0세~만 4세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 만 5세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200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수준 이하 가구까지 확대(2006년 70% → 2007년 100%)
-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을 200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수준 이하 가구까지 확대(2006년 90% → 2007년 100%)
-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부모의 소득수준 및 아동의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취학 전 만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2006년 100%)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지원을 2007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까지 상향 지원(2006년 30%)

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 확대
 - 2010년까지 만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연차적 확대 추진
- 한부모가족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상담, 문화 영역의 통합적 서비스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의 정신적·물질적 빈곤화 예방
- 한부모가족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지역의 물적·인적자원 연계 및 가정방문상담 등 전문적·집중적 개별 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 실무자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 제고

사. 미혼모자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 개정 『모·부자복지법』의 시행
 - 2006년 12월 개정된 『모·부자복지법』 시행

-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미혼모시설을 미혼여성의 출산 후 아동 양육지원을 위한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미혼모자시설'로 변경
- 미혼모자 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규정 신설

아. 농업인 영유아(만 0~5세)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 농업인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의 농어가 농업인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 중(2004년부터 시행)
 - 2007년부터 지원단가를 정부보육료의 70%(만 5세아는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인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가정육아비용 일부 지원 확대
 - 2006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의 농어가 농업인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을 통해 가정육아비용을 일부 지원
 - 2007년부터 지원액을 정부보육료의 35%(만 5세아는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

자. 이주여성의 모자보호시설 입소 지원

- 개정 『모·부자복지법』의 시행
 - 2007년 3월부터 개정된 『모·부자복지법』 시행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2007년 1월부터 시행)

- 2007년부터 개정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

차. 국내입양에 대한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개선 추진
 -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 제한요건 완화, 입양부모의 기존 자녀 수의 제한 삭제, 입양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등

- 입양수수료 면제
 -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에 납부하는 입양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추진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교육비용을 전액 지원
-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 현재 만 0세~12세까지의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
 - 만 13세~17세까지의 전체 입양아동에 대하여도 월 10만원의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액의 단계적 인상

제 4 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4

- I. 여성
- II. 아동·청소년
- III. 장애인
- IV. 노인
- V. 범죄피해자
- VI. 외국인
- VII. 재외동포
- VIII. 난민
- IX. 새터민
- X.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1. 여성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3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25조 제2항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3조,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향유에 대한 남녀 동등한 권리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사회권규약 제2조, 제3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향유에 대한 남녀 동등한 권리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나)호, (다)호,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가)호, (마)호, (바)호, (사)호, 제15조 제1항
 - 여성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여성차별철폐 정책 추진(헌법 기타 입법에 남녀평등의 원칙 규정,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기타 조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확립 및 법정 기타 공공기관을 통한 여성차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여성차별 행위 또는 관행의 억제 및 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행동 보장, 개인·조직·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현행법·규칙·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는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규정 폐지)
 -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
 - 성 우열 관념, 고정적 성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 양식 수정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 금지
 -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참여권의 남녀 동등 보장
 -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 참여권의 남녀 동등 보장
 - 국제적 수준의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업무 참여 기회의 남녀 동등 보장
 -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국적 취득, 변경, 보유권(부의 국적에 의한 처의 국적 자동 변경 금지, 무국적 금지, 부의 국적 강제 금지)
 - 여성의 자녀 국적에 관한 남성과 동등한 권리
 -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수행하는 시골여성의 역할을 고려
 - 농촌여성이 남녀평등에 기초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서의 참여권, 자조단체 및 협동조합 결성권, 지역사회활동에서의 참여권, 농업신용·대부·매매시설·공업기술의 수혜권, 토지·농지개혁 및 재정착계획에서의 동등한 대우)
 - 여성의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

3 현황

가. 국내 현황

- 유흥·단란주점, 다방, 이발소, 마사지업소 등 겸업형 서비스와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점차 산업화 및 전지역화되는 추세
-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구축되었으나, 각 시설 및 서비스 간 연계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여성농업인이 농업인력의 50.7%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농업 기여도도 높으나 경영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여 그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OECD 국가들의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 피해자들이 긴급구제수단 및 보호조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제17항)
 -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수사과정에서 화해 및 합의를 구할 목적으로 취한 조치가 학대의 피해자들인 여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 권고(제17항)
 -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가해자들이 기소되고 처벌받도록 보장 권고(제17항)
 - 부부간의 강간이 형사범죄를 구성함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권고(제17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여성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기존 법규정의 삭제를 통한 가정폭력방지및처벌에관한법률 강화 권고(제11항)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효과적 이행 촉구 권고(제12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가정폭력 대응 조치의 효율성 평가 권고(제11항)
 - 부부간의 강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 권고(제11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여성의 역할 증진에 우선순위 책정 권고(제18항)
 - 여성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배정 권고(제18항)
 -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의 불평등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도입 추진 권고(제18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 배정 권고(제37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헌법과 관련 법률에 협약 제1조를 반영하는 차별의 정의 포함 권고(제373항)
 -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절한 보호소 제공 권고(제375항)
 - 민간부문 특히 비전통적 부문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장려 권고(제377항)
 - 농촌여성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고려 권고(제381항)
 - 농촌여성의 상황에 대한 추가 연구와 해당 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권고(제381항)
 - 농촌여성의 신용거래에 대한 손쉬운 접근 권고(제381항)
 - 현재의 경제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관심 및 조치 도입 권고(제385항)

4 쟁 점

- 성매매를 예방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지원을 강화
-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 및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 확충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초·중·고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및 그 내실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지속
 - 성매매 예방관련자(교사 등)의 연수 실시
-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개선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성매매예방 국민의식 개선사업 지속 전개
 - 성문화개선운동협의회 구성 운영
 - 성매매방지업무 관계공무원교육 확대 실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관련부처 공무원 및 일선경찰공무원 교육 확대
 -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풀 구성(2007년) 및 운영(2008년 이후)
-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그룹홈의 연계기능 강화
 - 피해여성에 대한 의료, 법률, 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속 지원
 - 성매매방지사업 상담원 자질향상을 위한 상담원 양성교육, 보수교육 강화
-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지원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연계(2007년~2008년), 취약계층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성매매여성의 자활성공사례 발굴 및 유형별 분류를 통한 효과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개발(2007년)·보급(2008년)

나.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정·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전국적 단위의 가정·성폭력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여성폭력 방지 중장기계획 마련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의식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 추진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강화
 - 여성·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의 여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및 여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양성 추진
 -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에 여성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 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서비스 추진
 - 정부지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확대
 -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및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응급구조 연계기능 활성화
- 피해자 ONE-STOP 지원 시스템 확대 및 응급보호체계 확립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확충(2006년 3개소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시·군·구별 확대모델 개발
- 피해자 보호·치료기능 강화 및 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가정·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대
 -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
 -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종사자 관리,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체계 구축 및 정기평가 실시
 -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복무여건 개선

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농업·농촌기본법』의 하위법규 개정 추진 시 '농업인'의 정의에 '공동경영주' 신설 추진
 - 또한 읍·면장 등이 농업종사사실을 확인하는 '농업인 확인제도(가칭)' 도입 추진
- 가족구성원간 '농가경영협약' 수립을 위한 교육 및 협약 추진
 - 가족구성원이 농업경영계획, 역할분담, 소득분배, 근로조건, 경영이양계획 등에 대해 협약을 맺음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성취감 고취와 경영합리화 유도
 - 2007년부터 농가경영협약 시범 추진, 향후 농가경영협약 체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라.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 교육개발 및 지원 활동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 교육, 미취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교육,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 교육
- 경력관리 및 정보운영
 - 여성과학기술인 취업컨설팅 및 헤드헌팅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를 기초로 지원책 마련 및 정책 제안

II. 아동·청소년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4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25조 제2항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혼인 중 출생 여부와 관계없는 아동의 동일한 사회적 보호 향유권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4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아동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한 차별 없이 미성년자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가족, 사회 및 국가의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 아동의 출생 후 신분등록권
 - 아동의 국적취득권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사회권규약 제2조, 제10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차별 없는 모든 아동 및 연소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 아동권리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 아동 : 법 상 성인연령이 되지 않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 아동 또는 그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아동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 보장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의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
 -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
 - 부모, 확대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의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 권리 및 의무 존중
 - 아동의 출생 후 등록권, 국적취득권,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
 -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퇴치
 - 아동의 견해 표시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 부여
 - 아동에 유익한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권
 - 아동의 학대·유기·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아동의 휴식 및 여가권,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참여권
 - 아동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 아동의 약취유인, 매매 또는 거래 방지
 -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 15세 미만자의 적대행위 직접 참여 금지 보장 및 15세 미만자의 징병 자제
 -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인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마련할 필요
- 청소년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고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
-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청소년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유입, 범죄증가 및 학업능력 저하 등 우려
- IMF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약화 및 사회 양극화 현상 등으로 아동 학대·방임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회복지를 위한 치료·재활교육 등 사후 관리가 미흡
-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심화현상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복지 등을 돕는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고,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
- 게임 등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성적·인격적 성숙에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청소년의 약 20%인 200만명으로 추산됨
- 미래세대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권리 보호체계가 미흡하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등 사전예방적 대책이 소홀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아동 성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 권고(제40항)
 - 아동 성매매와 아동 노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 확대 권고(제40항)

-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소녀, 장애아동 및 혼외출생아동 집단의 지위 및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조치 채택 권고(제20항)
 - 차별금지(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아동의 견해 존중(제12조)을 포함한 아동권리협약 규정 및 원칙에 대한 국내법의 충실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권고(제22항)
 -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조치 권고(제22항)
 -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아동의 무국적의 위험 예방을 위한 입법조치 권고(제22항)
 - 체벌 방식의 분명한 금지를 위한 입법조치 권고(제22항)
 -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다중전문분야 협력적인 기구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해 도시 및 시골 지역에서 발달될 것 권고(제23항)
 - 아동을 위한 옴부즈퍼슨 또는 이와 대등한 독립적인 진정 및 모니터링 기구의 창설 권고(제23항)
 - 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포함된 모든 영역을 취급하고 성취된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상황에 기울인 정당한 고려에 따라, 정보수집체계 개선 및 적절하게 분산된 지표를 규명할 것 권고(제24항)
 - 아동권리협약 제4조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제25항)
 -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모든 적절한 조치 이행 권고(제25항)
 - 차별금지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비추어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제25항)
 -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아동의 기본적 자유의 효과적 향유를 위한 노력 권고(제26항)
 - 가족,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권고(제26항)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의 적절한 신체적 회복 및 사회적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조치 권고(제28항)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조기 발견, 감독 및 위탁제도의 창설 권고(제28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과 부모 모두 상호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 촉진 권고(제10항)
 -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권고(제12항)

- 2001년 마련된 아동보호육성계획의 범위 확대 권고(제14항)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는 중앙상설기구 마련 및 필요한 권한 과 재정적·인적·물적 자원 부여 권고(제14항)
- 아동 특히 소외계층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 용자원 내에서 최우선적 예산 배정 권고(제20항)
- 공공·민간·비정부 부문에서 아동을 위해 사용된 국가 예산의 규모와 비율 확인 권고(제20항)
-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항목별 통계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활용할 것 권고(제22항)
- 아동권리지표 개발의 가급적 빠른 완료 권고(제22항)
- 아동 관련 법령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통합 권고(제30항)
-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사법적·행정적 결정과 사업에 아동권리협약의 일 반원칙 적용 권고(제30항)
- 정책입안·결정과정 및 사회복지, 보건, 교육당국, 법원, 행정당국에 의한 조치에 아동 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적용 권고(제30항)
-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조치 권고 (제32항)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현권이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제35항)
- 법원, 행정기관, 학교, 교육제도 내 징계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입 법을 포함한 필요조치 권고(제35항)
-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는 정도 및 아동 의견 존중이 정책, 사업,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정기적 검토 권고(제35항)
- 관련 법령과 학교운영규칙을 개정하고 가정·학교·기타 시설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권고(제39항)
-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대신하는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식의 징계 장려 권고(제39항)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노력 강화 권고(제45항)
- 학대·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수집체계 마련(제45항)
- 성학대·성착취의 (아동)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재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 보장 권 고(제55항)
- 미성년자 성학대 및 성착취에 관한 법률정보,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등 성매매권유자,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조치 개발 권고(제55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다른 종족 간 결혼의 아동 특히 미국인과 동양인 사이의 아동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인식교양 캠페인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권고(제17항)

4 쟁 점

- 청소년관련 정책 과정에 대한 청소년 참여 증진
-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 방과 후 청소년을 위한 돌봄·보호 환경 조성
- 학대, 폭력, 유기, 방임 등으로 위협받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보장
-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교육 등 사회복지 지원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치료 기반 조성
-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설치·운영 확충

- 청소년특별회의의 지속적 개최 및 개선방안 마련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회의(700명 내외)를 구성 하고, 청소년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
 - 매년 개최 후 평가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 2009년까지 전국 200개 자치단체로 확대
- 공공생활권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운영위원회 확대
 - 2009년까지 260개 청소년시설로 확대

나.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 학교 동아리, 수련시설 동아리, 자원봉사 및 스스로지킴이 동아리에 대한 지원
-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 동아리박람회, 지도자 워크숍, 대표자 연수 및 사이버정보망 운영, 지구촌 문화체험, 전국 동아리경진대회, 문화마당 행사 등

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방과 후 시간대 청소년 대상 공적서비스 확대 추진
 - 방과 후 서비스를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2011년까지 300개 시설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12,600명 수혜 목표)
 - 운영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단계적 확대
-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율 제고
 - 종합적 복지·보호·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석율과 만족도 동시 제고
 -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

라.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아동건강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희망스타트) 사업 실시
 - 2007년부터 전국 16개 취약지역에 시범실시 중인 아동건강복지교육 통합서비스 사업을 성과 평가하여, 향후 전국 확대 추진

마.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1주(40시간) 과정 : 검사의 교육과정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
 - 4주 과정 : 1주 교육과정 이수 후 희망자 또는 추가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 7주 과정 : 성매매 피해청소년 중 장애(정신지체) 청소년

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강화

- 지역사회의 체계적·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위기청소년의 상황 및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실현
-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과 연계하여 6개 핵심분야(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지원, 비행청소년 선도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업청소년 취업지원, 의료지원, 기타 정신건강·경제·문화활동지원)별로 전문화·특성화된 CYS-Net을 구축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단일 정보망으로 연결하는 CYS-Net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지역 자원관리 및 지원통계분석 실시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 “청소년전화 1388”을 CYS-Net의 관문으로 활용
 - 위기청소년의 특성, 상황에 따른 표준화된 상담지원프로세스 확립 및 시행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성화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상담,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 CYS-Net 안에서 활동하는 인적 자원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연계능력 강화

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Youth Patrol) 프로그램 확대 보급
- 인터넷 중독 상담
 -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전국 137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24시간 전화 상담(1388), 1:1 상담, 사이버 상담, 문자 상담(#1388) 실시
- 인터넷 중독 치료
 -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19개 대학병원당 2~3개의 개인 병원을 연계하여 총 65개 협력병원에서 적시에 인터넷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진단비 등 무료 지원
 - 집중적 치료를 위해 의사 및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는 가족치료캠프와 청소년캠프를 방학 중 운영하고 캠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인터넷 중독 극복에 기여

아. 아동 옴부즈퍼슨 및 옴부즈키드 제도 운영

- 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아동 옴부즈퍼슨 및 옴부즈키드 제도 운영
- 아동옴부즈퍼슨(Ombudspersons) 제도 운영
 - 2006년부터 아동권리, 기초보건 등 UN아동권리협약 분야별로 전문가를 옴부즈퍼슨(16명)으로 위촉·운영 중
 - 향후 상설기구화 및 법제화 방안 검토
- 옴부즈키드(OmbudsKIDS) 제도 운영
 - 2006년부터 아동을 옴부즈키드(10명)로 위촉·운영 중
 - 향후 상설기구화 및 법제화 방안 검토

III. 장애인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5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아동권리협약 제23조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의 충분하고 품위 있는 생활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아동과 그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가능한 한 무상 제공)
 - 장애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지원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최근 장애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에 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의 차별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2007년 4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방안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등 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지급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부담을 보전하기에 부족함
-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병·의원의 재활의료진료 실시율이 나 재활병상 충족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수립이 절실함
- 중증장애인의 지원제도가 미약하여 재가중증장애인의 가족은 상당한 사회·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재가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격리에 이르게 됨
- 공적 재활보조기구 급여가 장애인의 수요 충족에 충분치 못하고, ‘선구입-후보상’ 방식의 공적 급여 절차가 소득능력이 약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구의 주택개조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PC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보급이 확대될 필요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장애아동 집단의 지위 및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조치 채택 권고(제20항)
 -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비추어 모든 장애아동의 기본적 권리 특히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 권고(제22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장애아동(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포함)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와 이를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 수요 및 교육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평가 권고(제51항)
 - 장애아동의 공공건물 및 장소(학교 및 여가시설 포함)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권고(제51항)

4 쟁 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현실화
-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서비스 확충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 재활보조기구의 보급 확대
- 장애인주거지원 확대
-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 정부합동준비단의 구성
 - 2007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한 후속대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합동준비단 구성
 -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로 구성
- 정부합동준비단 운영
 - 기존 법령·제도 개선계획 수립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마련
 -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개선계획에 중점을 두고, 시행령 마련과 연계
 - 중장기적 추진사항은 2007년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 수립
 -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 모두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하고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

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 장애수당 지급액의 인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중 18세 이상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13만원(6만원 인상)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는 3만원(1만원 인상)의 장애수당 지급
- 장애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
 - 기초수급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장애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중 18세 이상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1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는 3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액의 인상
 - 18세 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로 기초수급 대상인 자에 대하여 20만원(14만원 인상)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
 -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대상을 장애의 경중과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보호자 중 기초수급 대상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
 - 기초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20만원, 경증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15만원, 경증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각 지급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마련
- 2007년 1월부터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시행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의 추가 인상 여부는 향후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

다. 재활의료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1)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국립재활병원의 운영 활성화
 - 장애특성별 전문재활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재활병상을 확충(200병상 → 300병상)
 -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라 시각장애인센터, 청각장애인센터, 여성장애인센터, 장애인구강보건센터의 4개 센터를 신설
- 권역별 의료재활센터 건립 지원
 -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경기, 강원, 제주, 영남, 호남 및 충청의 6개 권역에 재활센터를 건립
 - 총 1,800 병상을 확충함으로써 재활병상 총족률을 21%까지 향상시킴
 - 건강증진기금에서 필요한 재원 마련
-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개선 지원 지속

(2) 재활서비스 조사·연구 사업 강화

- 매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2007년 주요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

(3)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확충

- 2011년까지 전국 234개소로 거점보건소 확대 추진
 - 건강증진기금에서 필요한 재원 마련
- 2007년 보건의뢰연계체계(Community care referral system)를 구축
 - 지역사회 보건의뢰연계 지침서 개발
 - 의뢰연계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 사업 실시

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 바우처(voucher, 이용권) 모델을 도입(장애인이 시·군·구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은 후 활동보조인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활동보조인은 바우처 해당 금액을 시·군·구에 청구)
 - 활동보조인 제도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도를 제고하고, 장애인 부양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해체를 방지

마. 재활보조기구의 공적 급여 확대

- 재활보조기구의 공적급여 확대
 - 의료적 성격이 강한 품목은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생활용품 성격이 강한 품목은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교부 확대
 - 급여확대순서 : 대상품목확대 → 단가현실화 → 내구연한조정

바. 장애인 주거지원의 확대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지속적 확대
 - 매년 공급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 설정
 - 장애인 재활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주거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 장애인가구 주택 개조 지원 확대

- 농어촌 거주 재가 장애인가구에 한정된 주택 개조 지원을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확대 검토
- 장애인주택 개조 지침 및 매뉴얼 제정 추진

사.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보급 확대 추진(2007년)
 -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체험관' 구축 운영(2007년)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정보화교육을 연계하여 장애인의 정보화 촉진
 -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지원 확대

IV. 노 인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4항, 제5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3 현 황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 전국민 대상 국민연금 추진 당시 연령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노후 대비가 부족한 반면, 가족 부양의식은 약화됨에 따라 광범위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에 속하게 됨
-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문제로 인한 육체적·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사회문제화 되고, 치매·중풍 노인 부양문제로 가족 해체 현상이 야기되는 한편, 유료요양시설의 경우 이용 비용이 과중하여 중산·서민층 노인의 이용이 곤란
- 고령자가구(65세 이상)의 5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실정인어서 고령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 고령자가구 비중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및 중산층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고령자용 주택 및 주거복지시설은 부족
- 농어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고 대부분 농어촌 노인들의 주 소득원이 본인의 노동에 의한 것이어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 노인학대의 예방·방지 및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1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 사업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노인학대 사례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피해노인과 가해자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미흡함
-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급속한 고령화 추세의 진전으로 고령자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수요 급증 전망

4 쟁 점

- 기초노령연금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 농어촌 노인을 위한 복지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확대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침해 방지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수요 충족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65세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완화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2007년 4월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국민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을 연금액으로 지급,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일부 감액 지급 가능
-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수급요건 불해당 시기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

- 기초노령연금 도입 시 기존 경로연금 폐지
-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되, 시행 초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

-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60% 수준이 되도록 노력
-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제정 작업 추진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시행

- 계획적·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부양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 장기요양보험료(50%) + 국가 등 부담(30%) + 본인부담(20%)으로 구성하되, 저소득층의 경우는 본인부담을 시설 10%, 재가 7.5%로 조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

-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되, 장기요양신청 및 장기요양인정 등과 관련된 규정은 2007년 10월부터 시행
- 중등증(1~3등급) 대상으로 시행 예정
-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제정 작업 추진
-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
 -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10개년 확충대책에 따라 매년 100개씩 요양시설 확충
 - 2007년 기초자치단체별 최소 1개소 이상 요양시설 신축
 - 2008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
- 장기요양요원 양성
 -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마련
 - 2010년까지 요양보호사 5만여명 양성 추진

다.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 기존 고령자 주택에 대하여 고령자가구의 특성에 맞는 최소 주거공간 규모 및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고시
- 고령자가구의 주택개조 지원
 - 노인주택 개조기준 및 매뉴얼 개발을 통한 홍보 강화
 - 주택개조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운영 검토
 - 중·장기적으로 주택개조비용에 대한 지원 검토

라. 저소득 및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
 - 단차제거 등 무장애(Barrier-Free)로 설계되고 노인복지·의료시설 등과 연계되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마. 농어촌 노인을 위한 복지 지원

-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율적 노인보호체계 구축
 - 건강한 노인과 여성 등을 노인봉사로원으로 양성하여 지역 내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하는 지역민 중심의 자율적 노인보호지원체계 구축
 - 2009년까지 200개 마을로 확대
 - 노인봉사로원 활동에 필요한 재가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고령 중증 노인 보호를 위한 각종 노인보호시설 확충 추진
 - 2009년까지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를 202개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 고령화 정도가 심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10인 규모의 치매노인센터 지원방안 마련 추진
- ‘찾아가는 이동 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목욕수발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봉사차량을 이용, 노인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바.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확대
 - 노인 인구 수, 노인학대 사례 발생 빈도,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확대
 -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
- 피해노인 보호 및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개발
 - 피해노인 및 가해자의 특성(연령, 소득수준, 건강상태 등)에 따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2007년 프로그램 개발 실시

사.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인권보호

-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의 시행
 - 2006년 5월경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제정
 - 시설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35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규정
 - 향후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도·감독

아.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

-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운영
 - 지역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 고령친화산업 기술력 강화
 -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 고령친화 한방 체질진단·치료시스템 등 개발

V. 범죄피해자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0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고문방지협약 제13조, 제14조
 - 고문피해 주장자의 진정권 및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받을 권리
 - 진정이나 증거제공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 고문피해 구제 및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
 - 고문피해자의 사망 시 피해자 부양가족의 배상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제26조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 권한 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조치
 -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39조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3 현 황

- 범죄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상해·재산상 손실을 입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책 미흡
- 범죄발생 직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충격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구제 및 권리확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상담체계 필요하나 현재 미비
-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피해자구조법』 상 엄격한 구조요건, 재정여건에 따른 불충분한 구조금액으로 인해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에 미흡
-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치유 및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장단기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지원체계 미비
- 손해배상 청구시 높은 소송비용, 소송에 대한 지식 부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손해배상 판결 후에도 가해자의 배상능력 결여,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손해회복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 있음
- 직장, 사회생활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 이해부족으로 직장생활의 어려움, 정신적 소외감 등 2차적 피해 노출
- 범죄피해자 등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수사 및 공판 등 형사에 관한 절차에 소외되어 '사건 당사자'에 어울리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소극적·방어적 위치에 있음
- 범죄피해자는 단순히 증거방법으로 취급받을 뿐 아니라 신문에 관여하는 경찰, 검찰, 법원도 피해자의 인격 보호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사례가 빈번
-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증인의 역할을 넘어 피해자의 소송법적 지위 강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대부분이 재피해에 대하여 심각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도 빈번하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대책 미비

4 쟁 점

- 범죄피해상담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개선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 범죄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 범죄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장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효율적인 범죄피해 상담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가 직면한 문제에 상응하는 상담 및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추진
 - 청소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 구축 및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마련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환자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육성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추진
- 현실적인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 제도의 확립
 - 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구조요건 완화 방안 검토

-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홍보 강화
- 국가와 민간지원 단체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신속히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정비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을 통해 조속한 구조금의 지급을 도모
-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의사상자에 포함하여 보상금지급 등 각종 보호제도 시행 추진
- 법률구조, 의료·보건서비스, 고용의 안정 등 종합적 지원
 - 범죄피해에 관계되는 손해배상 청구절차 지원 등 적절하고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 범죄피해자의 의료·보건서비스, 고용안정 지원 대책 마련
- 민간자원봉사활동 단체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 검찰과 연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의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연계체계를 구축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조직적인 전문인력과 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법 등 검토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체제 구비

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제도와 개선책 마련

-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강화 및 보호
 - 범죄피해자가 법원에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증인으로서 신문하지 아니하여 증인선서, 위증처벌의 우려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
 - 피고인과의 직접 대면을 피할 수 있는 장치(차단장치 설치) 마련 및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방식 도입 추진
 - 피해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추진
-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의 연락체계 형성
 -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세히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의 결과 및 자신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상소를 제기할 때 범죄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 이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 피해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 일정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를 인정하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 가해자 석방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
 - 가석방 심사 시 범죄피해자 등의 의견을 물어 이를 가석방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검토
 - 석방된 가해자에 의하여 또다른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소가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형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수사관련 사항, 공판진행사항, 형집행상황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
 - 범죄피해자의 경우 공판기록 열람·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하여 추진 검토
 - 가해자의 석방일자, 석방 후의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가해자의 보호관찰 처분 내용 및 진행상황 정보도 제공

다.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 범죄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장
 - 피해 직후의 피해자 일시 보호시설과 가해자가 체포되기 전까지 재위해방지를 위한 보호소 설치 및 확충 추진 검토
 - 참고인 내지 증인 신문과정에서의 보호 및 2차적 피해방지 방안을 연구, 검토
 - 경찰, 검찰 수사 시 가해자로부터 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을 '재피해방지대상자'로 지정하여 신변보호조치 추진
 - 협박이나 폭언 등 기존의 범죄와 관련하여 보복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보복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연구, 검토
 - 아동학대의 방지, 조기발견, 조기대응을 위하여 부모 등의 학습 지원 검토 추진

- 범죄피해자 정보 보호
 -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등의 가명 사용, 기소장 낭독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명을 낭독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연구, 검토
 - 범죄피해자 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형사처벌 조치

VI. 외국인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6조 제2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제27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의 문화 향유, 종교표명·실행, 언어 사용을 할 권리

-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아동권리협약 제30조

-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의 고유 문화 향유, 고유 종교 신앙·실천, 고유 언어 사용을 할 권리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5조 (c)호, (d)호 (iii)목, (f)호

-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것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국적취득권을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의 급증으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개별적 외국인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중복·충돌·부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함
- 외국인 근로자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생활에서 겪는 고충문제 해결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사후관리 필요
- 이주노동자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가 서로 화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게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조기 정착에 기여할 필요

-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 증가로 국제결혼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특히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차별 없는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
-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보호시설과 지원체계가 미흡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하는 특별한 관심 필요 권고(제22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혈통인 자가 종족적 기원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권고(제20항)
 - 이주노동자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적 지위에 있는 외국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권고(제22항)
 - 당국의 구상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의 지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 권고(제22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모든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제16항)
 -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혈통인 자가 종족적 기원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권고(제17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모든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 특히 개인의 안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선조치 지속 권고(제10항)
 - 인신매매 예방,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도움 제공의 확대 강화, 가능한 한 피해자의 모국어로 도움 제공 권고(제11항)

4 쟁 점

- 종합적·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체계 마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해결 및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원
- 이주노동자의 문화향유기반 마련
- 여성결혼이민자(특히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5 국가적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 2007년 4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국회 통과
 - 향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하에 5년 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조치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기타 지원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국어교육, 제도·문화교육, 보육 등 지원
 - 영주권자,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입국 또는 경제활동 등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 재한외국인의 민원 안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지정
 -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지원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 민관합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한국어·컴퓨터·생활법률·노동관계법 등 교육지원, 인권침해·생활 등 상담지원,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복지지원 프로그램 제공
 - 외국인근로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북부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설립(2007년 예정)하고, 향후 전국 권역별 설립 추진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상담 및 편의제공 지속 추진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행정콜센터’ 설립·운영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화민원상담실을 확대·개편하여 이민행정콜센터를 설립하고, 각 기관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24시간 통역서비스로 법률, 출입국·국적상담, 의료, 보건 등 각종 정보 제공
- 각 권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사랑방’을 운영하여 체류지원서비스, 정보교류 및 만남 장소 등 제공

다. 이주노동자 문화 지원

- 이주노동자 문화축제 및 지역특화문화축제에 대한 지속적 지원
 - 전국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한데 모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이주노동자 문화축제와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특화문화축제를 지원

- 이주노동자 문화가이드북 제작
 -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가이드북 및 영상물 제작
 - 미얀마, 스리랑카, 우즈벡 등 7개 언어로 제작

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 인포메이션 키트 제작·보급 등을 통해 결혼 당사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조기 적응 지원
 - 한국어교육, 정보 제공, 아동의 학교생활 지원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서비스 전달 체계 확충 및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이민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간담회 개최 등 정기적 만남의 장 마련,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 위촉·활용, 다각적 고충상담, 외국인정책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편견 불식,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추진

마.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 결혼 초기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 신속한 적응지원이 필요한 결혼 초기 가정에 대하여 교육도우미를 통하여 방문 및 소그룹 교육과 상담을 지원
 - 2007년 30개 시·군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 138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 가족으로의 통합 지원
 -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국방문비용 지원 등을 통해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갈등해소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으로의 통합을 지원

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외국인 여성보호시설 운영
 - 2개소(천안, 인천)인 외국인여성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 기존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외국인 여성 수용 기반 마련
-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
 - 2006년 11월 개통한 ‘이주여성 긴급전화’의 운영 활성화
 - 초기상담 및 긴급지원서비스 연계, 위기개입·면접상담·법률상담,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법률정보 안내 등
 - 언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을 상담원으로 양성하여 이들이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상담하고 지원하도록 함
 - 6개 언어 지원(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VII. 재외동포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 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3 현 황

-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들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화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동포 간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4 쟁 점

- 재외동포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적 요소 제거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동포 방문취업제 시행

- 동포 방문취업제와 관련, 2007년 1월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2007년 3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방문취업제’ 도입
 -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1회 입국 시 최장 3년간 계속 체류·취업이 가능하도록 시행

- 동포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되고 32개 업종으로 확대된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외동포 간 차별적 요소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검토

-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 국내 노동시장 상황, 관련국과의 외교문제 등을 고려하여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범위 확대 문제를 신중히 검토
 - 2008년 중국 등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동포사회 실태파악
 - 2009년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보완 등 제도개선
 - 2010년 중국 동포사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외동포자격 부여 범위 확대를 신중히 검토

VIII. 난민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6조 제2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4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
- 고문방지협약 제3조
 - 고문 위협이 있는 타국으로 추방·송환·인도 금지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아동권리협약 제22조

- 난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 원조 및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 추적 협조
 -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가정환경 박탈 아동과 같은 특별한 보호

3 현황

가. 국내 현황

- 난민인정신청자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 업무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효율적 난민인정 심사 곤란
- 난민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인권단체의 지속적 개선 요구
- 난민신청에서 난민인정허가 결정 시까지 불안정한 난민인정신청자의 지위를 개선할 필요
- 난민인정자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공적 구호시스템이 미비하여,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난민구호시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으로부터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공정성 구현 필요성 제기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난민신청인과 결혼한 여성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조치 권고(제17항)

4 쟁점

- 난민 담당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난민인정신청자 등의 권익 보호
-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 공정한 난민인정 심사기준·절차 마련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난민 담당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난민 업무 담당인력의 점진적 확충 추진
- 난민 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 매년 난민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난민워크숍> 개최
 - 2005년부터 법무연수원에 개설된 난민실무과정을 통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난민인정절차 등 전반적인 난민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난민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 실시
 - 난민 업무만을 전담하는 “난민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검토 및 추진

나. 난민인정신청자 등의 권익 보호

- 난민신청자의 신청 절차 개선
 - 난민불인정 결정 및 난민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 연장(7일 이내 →14일 이내)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 난민신청자의 불안정한 지위 개선
 -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선별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함
 - 난민인정신청자들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
 - 인도적 특별체류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난민신청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년 정기 국회에 제출 예정
-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 지원
 -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
-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 난민인정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직업 상담, 사회적응 훈련 및 정착지원, 의료지원 등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난민지원시설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난민신청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년 정기 국회에 제출 예정
-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라. 난민인정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절차의 공정성 확보
 - 난민인정 불허 또는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시 난민인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난민인정 불허 또는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14일로 연장하여 이의신청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 난민신청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년 정기 국회에 제출 예정
-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IX. 새 터민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3 현 황

- 재북 배우자가 있는 새터민이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북한배우자와 법적인 이혼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음
- 취업보호기간 2년 이후에도 생활의 곤란, 장기채용 유도 등의 이유로 취업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새터민의 실업률이 30%에 이르는 등 취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이 필요
-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새터민이 정착금을 과소비 등 비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정착금이 거래수단이나 채권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
- 새터민이 정착지원시설을 떠나 거주지에 진입하는 초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새터민 청소년들이 탈북 및 중국 체류에 따른 장기간 학습공백과 아울러 남북간 교육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쟁 점

- 새터민의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법령 정비
- 새터민에 대한 취업보호기간 연장
- 새터민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새터민에 대한 정착금 지원제도 개선
- 새터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 새터민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 2007년 2월부터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국내 취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혼특례 조항 신설, 취업보호기간 연장 규정 신설, 직업훈련 대상자 확대, 정착금 제도 개선 등 포함

- 국내 취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혼특례 허용
 -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국내 취적 북한이탈주민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 취업보호기간 연장
 - 취업보호기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직업훈련대상자 확대
 -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하여 보호대상자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도 신청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직업훈련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 정착금 제도 개선
 - 정착금을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정착금을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자립·자활 지원 강화

- (장기)취업장려금 증액을 통한 새터민 취업 유인 제고
 - 1년차 200만원 → 450만원, 2년차 300만원 → 500만원, 3년차 400만원 → 550만원으로 증액
- 새터민 채용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새터민 모범고용사업주에게 인정되는 정부우선구매제도의 신청요건 완화
- 새터민 취업보호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새터민 전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새터민 취업지원 내실화
- 새터민 채용박람회 등의 정기적 개최 등 새터민 채용기회 확대와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다. 거주지 정착지원

- 자원봉사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새터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멘토링, 자매결연 사업 등의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라.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강화

- 탈북 청소년의 교육안전망을 위한 디딤돌 학교(한겨레학교) 운영
 -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
 - 기숙식 학교로 무연고자, 학교 부적응자 등을 위한 교육안전망의 역할(학교적응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
 - 특기·적성교육, 체험교육 등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으로 탈북 청소년의 적응력을 향상시킨 후 일반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steping stone) 학교의 형태로 운영
- 일반학교 중심의 통합교육 기반 강화
 -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 새터민 학생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 보급
 - 밀집거주지역 내 새터민 청소년 교육보호전담관제 도입 적극 검토
 - 새터민 학생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X.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3 현 황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에 대한 국가정책이 이들에 대한 보호 보다는 주로 감시와 통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HIV 감염인·AIDS 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 한센병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한센인 및 그 2세들이 받아 온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오마도간척사업 등 과거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2005년 9월 김춘진 의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06년 5월 국가인권위,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형법상 강간죄가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성전환자 및 동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제기
 - 2006년 3월 서병수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학교교육과정 중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또는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형성할 우려

4 쟁 점

- AIDS 예방과 HIV 감염인·AIDS 환자의 인권보장과 조화
-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한센인 대상 과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 성전환자 및 동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형법상 처벌 강화
- 학교교육과정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를 돕도록 교육

5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개정 추진

- 2006년 9월경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HIV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규정 신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HIV 감염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 HIV 감염인 사망시 신고제도 폐지
 - HIV 감염인의 사망시 세대주가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실효성에 비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
- 시·도지사의 감염인 명부의 작성·비치제도 폐지
 - 감염인의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감염인 명부 작성·비치제도 폐지
- 비실명 검진제도 신설
 - AIDS 검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름·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을 사용하여 AIDS에 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한센인 인권 보장

- 한센인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
 - 국회에 계류 중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 활동 지속
- 한센인 정착촌 환경 개선
 - 중장기개선계획안에 의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시행

다. 『형법』 상 강간죄의 개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 성전환자 및 동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를 강간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간음’과 ‘추행’의 개념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

- 향후 『형법』 개정 문제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 2006년 3월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라.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보완

- 2007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에서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또는 편견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함

제 5 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5

Ⅰ. 인권교육

Ⅱ.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Ⅲ.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I.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의 의의

-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보급 및 정보전달”로, 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②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완전한 발전, ③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적·국가적·민족적·종교적 및 언어적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양성 평등, 우애의 증진, ④ 모든 사람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 참여, 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UN 활동의 증진을 지향함(UN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1995-2004 ;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A/51/506/Add.1))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교육
- 고문방지협약 제10조
 -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 포함 보장
 -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 포함

-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
 - 교육에 의한 모든 사람의 모든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민족·인종·종족·종교 간 이해, 관용 및 친선의 증진, 평화유지를 위한 UN의 활동 증진
-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42조
 - 교육의 목표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저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삶 영위를 위한 준비,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릴 의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다)호
 - 성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 장려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조
 - 수업·교육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관용·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리고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할 의무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공감에 비하여 인권교육의 기회 및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은 충분하지 못함
-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문화를 극복하고 친인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동시기부터 인권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의 전국적 확산 및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권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요청이 대두
- 법령·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인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있음
-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자기능력강화가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시민사회의 자발적 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인권교육기구의 설립 요구가 제기됨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고문방지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포함되는 고문의 정의 및 고문행위자의 형사책임을 특히 강조한 고문방지 관련 교육을 고문방지협약 제10조에 따라 경찰수사관, 검사, 기타 법 집행직원 및 의료종사자의 훈련 내에 충분히 포함하도록 권고(제64항)

-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특히 고문방지과 관련하여, 인권교육, 인식제고 및 일반적 훈련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증대 권고(제7항)
 - 배우자간 강간 및 성폭력 관련 문제에 관하여 일반 대중 특히 입법자, 법관, 법집행 직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식제고 및 훈련활동의 지속 권고(제17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 권고(제9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공 노력의 지속 권고(제22항)
 -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 및 의료계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인권 관련 전문가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고려 권고(제22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법집행공무원(특히 경찰관)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 제공 권고(제11항)
 -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속 권고(제11항)
 - 초등·중등·고등 및 직업교육 과정 특히 법집행공무원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도입 권고(제20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사회권 규약 규정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증대, 사법 절차 내에서의 적용 및 법집행기관의 준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 권고(제16항)
 - 여성 차별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성인 교육 영역에 재원을 배정할 필요성 권고(제18항)
 - 학교제도 내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교육 제공에 보다 더 많은 주의 권고(제21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제42항)
 - 일반 대중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 수행 권고(제43항)

-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대한 지지 촉진, 인식 및 이해 창출을 목표로 하는 노력 강화 권고(제20항)
 - 특히 소녀, 장애아 및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적 태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중 캠페인 전개 권고(제20항)
 - 교사, 사회복지 종사자, 판사, 법집행공무원, 보건 직원 및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영역 내의 정보 수집을 책임지는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아동과 함께 그리고 아동을 위하여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협약에 관한 훈련활동 보장 권고(제21항)
 - 아동 권리의 학교 교과과정 내 통합에 대한 고려 권고(제21항)
 - 아동권리협약 제29조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정책 재검토 권고(제29항)
 - 소년사법제도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권고(제31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아동이 제기하는 청원을 접수·조사·대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널리 알림으로써 아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제18항)
 - 일반 국민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권리 홍보 캠페인 실시 권고(제26항)
 - 아동 관련 전문가(특히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일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아동수용시설 종사자, 정신과의를 포함한 의료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권고(제26항)
 - 한부모가정 자녀, 혼외출생 자녀, 장애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하여, 대중 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필수적인 사전 조치 이행 권고(제32항)
 - 부모, 교육자, 공무원, 판사,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아동이 갖고 있는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할 권리에 관한 정보 제공 권고(제35항)
 - 차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가 가져오는 해악에 관한 공공교육 캠페인 실시 권고(제39항)

- 아동친화적인 아동학대·방임사건 진정의 접수·감독·조사·기소와 관련 법집행 공무원, 사회복지사 및 검사에 대한 훈련 권고(제45항)
- 부모, 아동, 교사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 등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 근절을 위한 효과적 조치 권고(제51항)
-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교육의 목표 관련)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 권고(제53항)
- 아동성착취 관련 아동 친화적인 사건 접수·감시·조사·기소 방법에 대한 법집행 공무원, 사회복지사, 검사에 대한 훈련 실시 권고(제55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여성의 법률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보 배포, 법적 조언 제공 보장, 모든 필요한 조치 채택 권고(제373항)
 - 특히 법관, 보건담당자,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적훈련 등 포괄적 조치를 도입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노력 강화 권고(제375항)
 - 교육 및 대중매체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 비폭력적 분쟁조정 모델 포함 권고(제375항)
 - 사업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신고를 장려하는 인식향상 캠페인 및 프로그램 도입 권고(제379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의 일반 권고사항,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을 널리, 특히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에 배포 권고(제386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문제에 관하여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훈련 및 교육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제231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난민 신청인과 결혼한 여성, 다른 종족 간 결혼의 아동 특히 미국인과 동양인 사이의 아동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인식교양 캠페인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권고(제17항)
 -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선전,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많은 자원 배정 권고(제20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적 구제조치, 차별행위 발생 시 배상받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정보를 널리 전파하고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제13항)

4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인권교육 일반

(1) 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종합적 인권교육계획을 마련

(2) 인권교육법 제정

-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써, 인권교육의 개념,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인권교육의 대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인권교육의 심의·조정 기구, 인권교육 기관,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교육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 추진

(3)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효과적인 인권교육 수행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보급

(4) 인권교육평가지표 개발

- 인권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하고 각 기관의 인권교육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교육평가지표’ 개발

(5)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 인권에 대한 주제별, 분야별 강사 풀을 구축·운영·관리하기 위한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가 연수과정 개설
- 향후 인권교육가의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학회’ 설립 추진

나. 학교 인권교육**(1)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
- 관련 교육기관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학교의 자발적 인권교육 실시 유도

(2)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 2007년 확정·고시되는 교육과정 및 그에 의거하여 개발될 교과서가 인권친화적으로 개발·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3)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 교원양성기관에 신설될 교직소양과목과 교원연수기관의 자격 및 직무연수과목 편성에 인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
- 향후 시·도 교육연수원에 인권교육 강화 지속적 권장

(4) 인권교육연구학교 및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운영

-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연구학교를 지정하고 필요한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하며, 그 운영성과를 공유하여 인권교육을 국내·외적으로 확산
- 권역별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여 대학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법조인·사회복지사 등 예비 인권리더 양성과 관련이 있는 대학·학과에 인권과목 개설 확대

다.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1)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 매년 인권관련 교육을 포함한 ‘공무원 교육 훈련 지침’ 시달
 - 각 부처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 프로그램·자료, 교재, 강사 등을 지원받음
- 각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평가 시 평가지표로 반영
 - 매년 1회 교육훈련 종합평가 실시

(2)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일반
 -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감성·덕성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제고
 - ‘1주 이상 교육과정’에 원칙적으로 인권교과목 편성하고 외부전문가 초청 강의 및 인권관련단체 현장체험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교육을 신설하여 일일 수용체험, 역할극, 봉사활동, 국토순례 등 교육 실시
- 기관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 기관장의 인권마인드 함양, 민주적 리더십 제고, 인권침해 사례 연구 및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1~2일 연찬회 실시
-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 법무연수원 교육, 지방교정청 단위 교육, 구금시설 방문 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인권일반이론 교육, 인권침해 사례 분석 교육
 -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인권교육을 위해 각 지방교정청별 인권교육 내부전문가요원 양성
- 출입국관리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 전·후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수시 실시
 - 긴급보호, 단속장비, 계구사용 등 관련 내용 교육

(3)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 개발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 및 분야별 심화 프로그램 개발
- 경찰관 인권강사 양성
 - 경찰종합학교의 인권과정을 활용하여 각급학교 교수요원 및 인권센터 전문인권강사 양성
 -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
- 인권과정 개설
 - 전 경찰관 대상 연간 10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 추진
 -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수사보안연수소, 지방경찰학교, 경찰서(직장교육훈련) 별로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운영기준시간을 정하여 운영

(4) 군대 내 인권교육

- 인권교육 지침 제정
 -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일정 및 내용, 교육시행에 대한 보고체계, 소요 예산 등이 반영된 인권교육 지침을 제정
- 인권교육 연수과정 및 인권리더십 과정 활성화
 - 각 군 인권교육 교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연수과정과 각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리더십 과정을 활성화
 - 향후 군부대와 육군 사관학교 등으로 인권교육 확산

(5) 새터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 2007년부터 하나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정례화
- 2008년부터 새터민 보호담당관(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향후 유관 부처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범위 확대

(6)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연중 교육 실시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민간협회에서 자체 교육계획에 따라 연중 교육 실시
- 2007년 세이브더칠드런 등 민간단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실시

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청소년인권체험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생활과 관련된 고충·권리침해 구제 또는 예방활동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역량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이 직접 기획·추진하는 청소년인권체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보급
- 시설 생활노인 대상 인권교육
 -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학대예방을 위하여,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부과된 '시설 생활노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지속적 지도·감독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인권교육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방법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2007년 2월 현재 2곳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2008년까지 5곳으로 증설할 예정
- 새터민 대상 인권교육
 - 새터민 스스로 인권의 내용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긍심을 느끼며 새터민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새터민 대상 인권교육 실시

마. 기업 및 언론인 인권교육

- 기업 대상 인권교육
 - 간부 양성과정 등 기업 내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반영을 위한 협의 추진
 - 관련부처, 인권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 중앙 및 주요 지방 언론사의 신입기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향후 중견기자, 구성작가 등으로 언론인 인권교육 범위를 확대
 - 언론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언론인 재교육기관과 인권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협의 추진

바.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 대학부설 평생학습원에 인권강좌 개설 및 인권강사 지원
-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사.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친화적 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문화적 접근의 일환으로 인권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사진, 포스터 등 개발·보급
- HIV 및 AIDS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 HIV/AIDS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HIV 감염인·AIDS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 한센인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센병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II.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1 국내적 기준

- 헌법 제5조 제1항

2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8조
 -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자유권규약 제20조
 - 전쟁을 위한 선전 금지
 -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
- 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4항, 제28조 제3항
 -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 교환 촉진(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고려)
 - 아동의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협력 촉진·장려(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고려)
 -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된 국제협력 촉진·장려(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고려)

3 현 황

가. 국내 현황

-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을 위해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
- 국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인권증진 및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 촉진 필요
- 인권외교 분야에서 아시아 내 인권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필요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인권 발전에 기여할 역할 및 기대 증대
-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 증대
 - UN에서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3회(제59차, 제60차, 제61차), 총회 제3위에서 2회(제60차, 제61차) 결의안 채택
 - 우리나라는 2006년 제61차 UN 총회 결의안에 대해서만 찬성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 속에 조약기구들이 채택한 견해들을 고려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준비할 것 권고(제44항)
-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비정부기구와의 보다 밀접한 협력 증진 권고(제23항)
 - 소년사법행정의 (훈련프로그램) 영역에 있어서 인권센터(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예방및형사사법국(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대한 국제적 조력 요청 권고(제31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전국 및 지방 차원에서의 정책수립, 협약 이행에 관한 향후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 등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부문과의 체계적 협력 추진 권고(제24항)
 - 아동 관련 민간사업단체의 등록과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의 감독 강화 권고(제24항)
 - 1996년 1차 및 2001년 2차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세계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효율적인 통계수집을 포함하여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권고(제55항)

4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정부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 참여원칙 확립

- 시민단체 추천위원 위촉 확대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내 위원회 구성 시 개별 위원회별로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비율이 위촉위원 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
 -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

나.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지속
 - 행정자치부장관(시·도지사)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소요사업비 지원
 -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구축, 자원봉사, NGO활동기반 확대, 안전문화·재해난극복, 소외계층 인권신장 등을 공익사업 유형으로 지정
 - 지원사업 심사·선정·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각계의견 반영 등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 시민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수용과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 적극 활용

다. 인권 관련 국제외교회의 참여

-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활동
 - 보편적 정례검토 메커니즘 구축 및 특별절차 제도 증진 논의에 기여
- UN 총회 제3위 참석
 - UN 총회 차원의 인권 논의 및 규범 정립에 기여
- UN 주요 부문별 인권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 해당 인권협약의 이행검토, 개정 및 일반논평 마련 등 논의에 참여
 - 사회권규약 : 매년 2회 (5월, 11월)
 - 자유권규약 : 매년 3회 (3월, 7월, 11월)
 - 고문방지협약 : 매년 2회 (5월, 11월)
 - 아동권리협약 : 매년 3회 (1월, 5월, 9월)
 - 여성차별철폐협약 : 매년 3회 (연중)
 - 인종차별철폐협약 : 매년 2회 (2월, 8월)

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국제기구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분담금 납부
 -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 아동기금(UNICEF), UN 난민고등판무관(UHCHR), UN범죄예방/형사사법기금(UNCPCJF), UN 인권기술협력기금(UNVFTC), UN 고문방지기금(UNVFVT),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부
 - 납부액의 점진적 증액 검토
-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및 무상원조 비율 확대
 -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특히 무상원조 비율의 확대를 통해 저개발국 국민의 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에 간접적 기여

마.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

- 대북한 인도적 협력을 위한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마련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인도적 협력사업을 지속한다는 입장 견지
- 정부 차원의 식량, 비료 지원
 - 북핵문제 관련 2·13 합의 이행상황을 고려하여 식량, 비료 지원 추진
-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사업 활동 지원
 -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영·유아와 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농업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유도
 -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
 - 북한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 및 인권분야 기술협력 증대 필요성 촉구
 - 북한과 국제사회 간 대화 및 협력 필요성 촉구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 지원
- 미국, 일본, EU 등과 북한인권 관련 양자 또는 공동 협력
- 북한인권개선 관련 국내외 NGO 활동 지원
- 탈북자 수용,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지속

III.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1 현 황

가. 국내 현황

국제인권규약(소관부처)	가 입 일	유 보 조 항
자유권규약 (법무부)	1990. 4. 10.	• 제22조 (결사의 자유)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법무부)	1990. 4. 10.	유보조항 없이 가입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법무부)	미가입	• 사형을 규정한 국내법과 규약의 상충
사회권규약 (법무부)	1990. 4. 10.	유보조항 없이 가입
고문방지협약 (법무부)	1959. 1. 9.	• 제21조 (당사국간 통보) • 제22조 (개인진정)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법무부)	미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가족부)	1984. 12. 27.	• 제16조 제1항 (사)호 (가족성에 있어서의 부부의 동등한 권리)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여성가족부)	2006. 10. 18.	유보조항 없이 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 (외교통상부)	1978. 12. 5.	유보조항 없이 가입

아동권리협약 (보건복지부)	1990. 9. 25.	• 제9조 제3항 (아동의 면접교섭권) • 제21조 가호 (입양허가제) • 제40조 제2항 나호 (5)목 (상소권 보장)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보건복지부)	2004. 10. 24.	유보조항 없이 가입
아동 매매·성매매·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보건복지부)	2004. 10. 24.	유보조항 없이 가입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노동부, 법무부)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미가입	2007. 3. 30. 서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보건복지부)	미가입	

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 고문방지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의 유보에 대한 재검토 권고(제69항)
-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의 유보 철회 선언에 관한 노력 촉진 권고(제22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 및 제22조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위한 재검토 권고(제20항)
 - 개인진정과 관련,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의하여 표명된 견해(Views)의 실행을 위한 즉각적인 절차 이행 권고(제21항)
 - 보고서가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의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준비될 것 권고(제23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 채택 시 그 실행을 위한 즉각적인 절차 이행 권고(제7항)
 -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 및 제22조 유보 철회 권고(제8항)
 - 모든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조치들이 자유권규약에 합치하도록 보장, 특히 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 관련 국내 규정의 자유권규약 관계 규정의 엄격한 부합 권고(제9항)
 - 국내법에 “테러행위”의 정의 도입 권고
-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모든 국내법 검토 권고(제16항)
-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통계기관과 관련 부처가 사회권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권고(제34항)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10호(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고려 권고(제35항)
 - 사회권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부여 권고(제36항)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참조 권고(제36항)
-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제21조 (a)호, 제40조 (b)호 (v)목에 대한 유보 재검토 권고(제19항)
 - 1993년 ‘국제입양과 관련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비준 권고(제22항)
 - 아동고용 허용 최소 연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8호 비준 검토 권고(제30항)
-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 (5)목 유보 철회 권고(제10항)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와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하여 국내입양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제10항)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점검 메커니즘 설립 추진 및 이행 적극 점검 권고(제16항)

- 1993년 ‘국제입양과 관련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비준 권고(제43항)
-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제59항)
-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2개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제61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2000년 이전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제369항)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0호 및 제111호 비준 권고(제379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여러 일반권고 연구 권고(제231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따른 선언(개인진정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사권 승인 선언) 권고(제233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200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특히 제2조 내지 제7조)의 국내법에 따른 이행 시 더반(Durban)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의 선언 및 행동계획의 관련 부분 고려 권고(제14항)

2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검토
 -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2007년 국회비준동의안 제출
- ‘강제실종으로부터모든사람을보호하기위한국제협약’ 서명 추진
-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 비준 추진 검토

-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제87호), 단결권및단체교섭에관한협약(제98조) 비준 검토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2006년 12월) 이후의 노사관계 법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국제기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비준을 신중하게 추진
-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협약(제29호),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 비준
 - 강제근로협약(제29호)은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부처 등과의 협의 및 국방부의 병역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비준 추진
 -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은 향후 자유형에 관한 형법·행형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작업과 제도 개선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 고문방지협약 제21조 (국가간 통보), 제22조 (개인진정) 유보 철회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사)호 (가족성에 대한 부부의 동일한 권리) 유보 철회 검토
- 그 밖에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아동의 면접교섭권, 제21조 가호(입양허가제), 제40조 제2항 나호 (5)목(상소권 보장)의 유보 철회에 대하여는 국내 법·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다.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 작성 및 심의 준비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07년 제3차 사회권규약 이행보고서 제출
 - 2008년 제3·4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10년 제4차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10년 제7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인권 관련 국제조약기구의 이행보고서 심의 준비
 - 제5·6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통합 심의(2007년 8월) 준비
 - 제13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2008년 2월) 준비
 - 제3차 사회권규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 준비
 - 제3·4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통합 심의 준비

라.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

(1) 이행입법 마련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이행입법 마련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서명, 비준하였으나 아직 이행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
 - 2006년 12월경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 배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처벌, 국제형사재판소 사건에 관한 사법방해죄에 대한 처벌,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등 규정

-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입법 마련
 -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비준에 앞서 이행입법 연구
 - 2007년 상반기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국내 이행입법 절차 착수

(2) 개인진정에 대한 국내이행방안 검토

- 개인진정 관련 TF 운영을 통한 국내이행방안 검토
 - 법무부, 외교통상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로 구성
 - 개인진정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검토
 - 재심 또는 비상상고를 이용하는 방안, 특별법을 통한 금전보상 방안, 국가배상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 도출 가능성 검토

제 6 부

향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운영

6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6. 후속계획의 수립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내·외적으로 발표된 시점부터 2011년까지 시행됨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 정부 각 관계부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함
- 정부 각 관계부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매년말 정기적으로 이행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이를 국민 일반에 공개함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정부 내 모니터링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담당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및 언론은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국제인권조약기구(UN)는 우리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 시, 해당 협약과 관련이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음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국제인권 여건의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인 201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함

6 후속계획의 수립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인 201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차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준비함
- 차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12년~2017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최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결과가 그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부록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참여한 부처 및 기관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소속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소속 외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I. 생명권		
가. 사형제도 개선	법무부	
나. 생명유리·안전 강화를 위한 『생명유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개정	보건복지부	
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II. 신체의 자유		
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법무부	
나. 형사절차적 권리의 증진	법무부	
다. 경찰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개선	경찰청	
라. 대용감방 개선	법무부	
마.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한 『행형법』의 개정	법무부	
바. 수용자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법무부	
사. 과학적 수형자 분류를 통한 사회복귀능력 제고	법무부	
아.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법무부	
자. 소년법의 연령 및 갱생촉진을 고려한 제도 개선		
· 기소전 다이버전의 다양화·내실화	법무부	
· 검사의 결정 전 소년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에 의한 환경·인성 조사	법무부	
·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개방 처우 확대	법무부	
· 성범죄 피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속	국가청소년위원회	
차. 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점검	법무부	
카.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보건복지부	
III. 거주·이전의 자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정책의 체계적 수립	건설교통부	
나. 장애인에 대한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차별 금지	보건복지부	
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라. 강제퇴거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인도적 집행 노력	법무부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IV.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가.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	법무부	
나. CCTV 등 감시장비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		
·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강화	행정자치부	
· 민간부문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정보통신부	
· 노사협약에 의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노동부	
다. 교정시설 내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사전허가제 폐지	법무부	
라.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또는 명예 보호 강화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마.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도 개선		
·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법정서식 개선	행정자치부	
·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사.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추진	정보통신부	
아.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의 강화		
·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보건복지부	
·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정보 보호	노동부	
V.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관련 검토	국방부	
나. 국가보안법의 남용 방지	법무부	
다. 군인의 종교 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선택권 보장	국방부	
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교육인적자원부	
VI.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행정자치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행정자치부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의 지속 추진	법제처	
라. 자막방송의 확대 시행	방송위원회	
마.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정보통신부	
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합리적 운용	경찰청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VII. 참정권		
가. 장애인유권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해외체류자 국외부재자투표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양성평등에 기초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 여성공천할당제의 개선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중앙인사위원회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추진	중앙인사위원회	
마. 장애인에 대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중앙인사위원회	
바. 지방인재에 대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중앙인사위원회	
VIII.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가.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법무부	
나.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국방부	
다.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국방부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군사·경찰 고충민원 처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마.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바. 민원통합 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 온라인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	법제처	
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 확대	법제처	

제3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I. 교육을 받을 권리		
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책임제 지속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나. 저소득층·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다. 장애인의 교육 보장	교육인적자원부	
라.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교육인적자원부	
바. 학교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이외의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교육인적자원부	
사.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의 지속적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아.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II. 근로의 권리		
가.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마련·시행	노동부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노동부	
다. 가내근로자의 권리 보호	노동부	
라.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개선		
• 의무고용제도의 재편	노동부	
• 직업생활시설 재편	보건복지부	
• 직업교육체계의 개편	노동부	
•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추진	노동부	
마.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노동부	
바.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	노동부	
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상 차별 금지	노동부	
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검토	노동부	
자. 농림업·수산업·축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 제고	노동부	
차. 퇴직급여제도 적용 확대	노동부	
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강화	노동부	
타.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노동부	
파.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노동부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III. 근로3권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노동부	
나.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노동부	
다.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에 대한 검토	노동부	
라.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동부	
마.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노동부	
바.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및 벌칙규정 삭제	노동부	
사.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등 관련 규정 개선	노동부	
아.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 삭제	노동부	
IV.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가. 장애인 창업 지원	노동부	
나.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노동부	
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속적 시행	특허청	
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활성화	특허청	
마.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재정경제부	
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 확산	공정거래위원회	
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보건복지부	
나.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	노동부	
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노동부	
마. 실업급여의 혜택 확대	노동부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비정규직 참여 확대	노동부	
사. 사고 능가 및 농촌고령가구 등에 대한 도우미 지원	농림부	
아. 전기요금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 전기공급	산업자원부	
자.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 환경 조성	산업자원부	
차.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 지원	농림부	
카.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1)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농림부	
(2) 수산물 안전성 강화	해양수산부	
(3) 식품 안전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건설교통부	
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	건설교통부	
하. 순환정비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시행 유도	건설교통부	
VI. 건강·보건 및 환경권		
가.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나. 임신·출산 Total Care 보험급여 추진	보건복지부	
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라.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마. 노후 의료보장의 내실화	보건복지부	
바. 노인특화건강검진(일차검진) 도구 개발 및 시행	보건복지부	
사.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등 지원		
•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쉼터 건립 지원	보건복지부	
• 국내 미허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 등재 추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자.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	
차.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에 대한 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카.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교육인적자원부	
타.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및 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파. 환경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환경보건정책 시행	환경부	
하. 대기·해양 환경 개선		
(1)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개선	환경부	
(2)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추진	해양수산부	
거.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환경부	
너. 친환경적 개발사업 추진 유도	환경부	
VII.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가.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문화관광부	
나. 문화소외지역 또는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관광부	
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 확대 및 개선	국가청소년위원회	
라. 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문화관광부	
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문화관광부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VIII.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가. 양성평등 및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한 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	
나.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		
•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	노동부	
•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방안 검토	노동부	
• 육아휴직제도 개선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노동부	
• 모성보호제도 이용 여건 조성	노동부	
다. 가족 돌봄을 위한 정책마련		
• 아이돌보미 사업	여성가족부	
•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 아버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노동부	
•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검토	노동부	
• 학부모 저녁 모임 지원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의 제정 추진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기관의 측정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여성가족부	
마. 무상보육과 보육료 감면 확대	여성가족부	
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여성가족부	
사. 미혼모자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여성가족부	
아.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농림부	
자. 이주여성의 모자보호시설 입소 지원	여성가족부	
차. 국내입양에 대한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 입양수수료 면제	보건복지부	
•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추진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보건복지부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I. 여성		
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초·중·고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및 그 내실화	교육인적자원부	
•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개선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지원	여성가족부	
나.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농림부	
라.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과학기술부	
II. 아동·청소년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설치·운영 확충	국가청소년위원회	
나.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국가청소년위원회	
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국가청소년위원회	
라.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마.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국가청소년위원회	
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강화	국가청소년위원회	
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국가청소년위원회	
아. 아동 옴부즈퍼슨 및 옴부즈키드 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III. 장애인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다. 재활의료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보건복지부	
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마. 재활보조기구의 공적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바. 장애인 주거지원의 확대	보건복지부	
사.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부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IV. 노인		
가.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시행	보건복지부	
다.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건설교통부	
라. 저소득 및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건설교통부	
마. 농어촌 노인을 위한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농림부	
바.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사.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인권보호	보건복지부	
아.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	산업자원부	
V. 범죄피해자		
가.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법무부	
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제도와 개선책 마련	법무부	
다.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법무부	
VI. 외국인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법무부	
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지원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노동부, 법무부	
다. 이주노동자 문화 지원	문화관광부	
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여성가족부	
•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조기 적응 지원	여성가족부	
• 이민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	
•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여성가족부	
마.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농림부	
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여성가족부	
VII. 재외동포		
가. 동포 방문취업제 시행	노동부, 법무부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검토	법무부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VIII. 난민		
가. 난민 담당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법무부	
나. 난민인정신청자 등의 권익 보호	법무부	
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법무부	
라. 난민인정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법무부	
IX. 새터민		
가.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통일부	
나. 자립·자활 지원 강화	통일부, 노동부	
다. 거주지 정착 지원	통일부	
라.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강화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X.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나. 한센인 인권 보장	보건복지부	
다. 『형법』 상 강간죄의 개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법무부	
라.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보완	교육인적자원부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I.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나. 학교 인권교육		
(1) 학교인권교육협의체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	
(3)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교육인적자원부	
(4) 인권교육연구학교 및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운영	국가인권위원회	
다.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1)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중앙인사위원회	
(2)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법무부	
(3)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경찰청	
(4) 군대 내 인권교육	국방부	
(5) 새터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통일부	
(6)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보건복지부	
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청소년인권체험 프로그램 지원	국가청소년위원회	
• 시설 생활노인 대상 인권교육	보건복지부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인권교육	노동부	
• 새터민 대상 인권교육	통일부	
마. 기업 및 언론인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바.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 국민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친화적 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국가인권위원회	
• HIV 및 AIDS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보건복지부	
• 한센인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보건복지부	

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II.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가. 정부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 참여원칙 확립	행정자치부	
나.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속 추진	행정자치부	
다. 인권 관련 국제외교회의의 참여	외교통상부	
라. 공적개발원조	외교통상부	
마.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	통일부	
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외교통상부	
III.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법무부	
•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검토	보건복지부	
• '강제실종으로부터모든사람을보호하기위한국제협약' 서명 추진	외교통상부	
•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 비준 추진 검토	외교통상부	
•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제87호), 단결권및단체교섭에관한협약(제98호) 비준 검토	노동부	
• 국제노동기구의 강제근로협약(제29호),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 비준	노동부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외교통상부	
다.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 작성 및 심의 준비	외교통상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라.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이행입법 마련	법무부	
•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입법 마련	법무부	
• 개인진정에 대한 국내이행방안 검토	법무부	

